LH 살고 싶은 집과 도시로 국민의 희망을 가꾸는 기업

거창숙박시설 정비사업 A1BL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입주자 모집공고일 [2026.05.28.] 주택관리번호 [2026000222]

■ **건설위치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대평리 1005-12, 1005-81**

■ **공급대상 : 통합공공임대주택 40호**(일반형 38호, 주거약자용 2호)

총건설호수	전용 39㎡A	전용 39㎡B (주거약자)	전용 42㎡A
40	17	2	21

- LH콜센터(1600-1004)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신청 관련 사항에 대해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신청과 관련한 상담은 주택 신청의 참고자료로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신청자 본인이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신청자격 등을 충분히 숙지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신청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9.09.27일 이후 입주자 모집부터 **동일 유형 공공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로 중복선정이 되지 않으며, 장기임대주택(통합공공임대,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되오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 청 안 내

■ **이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6.05.28.(목)**이며, 이는 **입주자격(신청자격, 나이, 세대구성원, 주택소유, 자산, 소득 등)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이 주택의 주택관리번호는 2026000222이며, 공고문은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https://apply.lh.or.kr) 및 모바일앱(LH청약플러스)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입주자 선정절차 및 일정** (공고문 6~8페이지 참조)

신청접수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입주자격 조사 및 검증 부적격자 소명 처리	당첨자 발표	계약체결
'26.06.09~11	'26.06.25	'26.06.29~07.01		'26.10.07	'26.10.27~29

※ **입주자격, 신청요건 및 일정을 정확히 확인하시어 해당 일자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격** (공고문 9~24페이지 참조)

입주자 모집공고일(2026.05.28.)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청년 및 혼인 중이 아닌 경우로서 단독세대주로 입주하려는 고령자는 무주택자)으로서 **자산·소득 기준 및 입주자격 구분별 입주자격을 충족한 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다만,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 과거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 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는 자는 입주자로 선정이 불가합니다.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공급유형(통합, 국민, 행복, 영구)내에서 중복신청도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종전에 동일한 공급유형에 선정된 예비입주자 지위는 자동 상실**됩니다. 중복된 예비입주자 지위는 ①입주자 모집공고일, ②신청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순서로 상실 처리됩니다.

■ 임대조건 (공고문 4~6페이지 참조)

① 통합공공임대주택 임대조건은 「공공주택 특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소득연계형 임대료 체계를 통해 산정되며, 동일 공급형의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임대조건이 달리 적용**되오니, **입주자격 구분별 세부 입주자격, 임대조건 및 세대구성원 소득정보 등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② **갱신계약 시 임대조건은 입주자 세대구성원의 소득, 자산변동 등에 따라 변경 또는 할증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③ 임대조건의 변경(임대조건의 상한, 증액, 할증)은 **공급신청(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및 갱신계약(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산정한 시점 기준) 시점의 입주자 소득수준 등을 확인하여 계약시점에 한하여 적용**하며, **임대차기간 중에 입주자의 소득변동 등에 따라 변경 적용하지 않습니다.**

■ 임대기간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최대 거주기간(30년) 제한이 있는 공공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 입주자격 검증

무주택세대구성원(청년 및 혼인 중이 아닌 경우로서 단독세대주로 입주하려는 고령자는 무주택자)으로 일정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주택소유) 국토교통부 주택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해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분리 배우자세대 포함)**을 대상으로 조회
- (소득 및 자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분리 배우자세대 포함)**을 대상으로 조회

금융자산 조회 안내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의 시행(2016.12.30)에 따라, **통합공공임대주택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의 보유 자산 중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회**하기 위하여 공급신청 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안 내 사 항
동의서 수집 사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 시 금융기관 제출용
동의서 서명 대상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서명	정보 제공 동의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금융기관에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명의자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
동의서 유효기간 등		제출일부터 6개월 이내 금융정보 조회 시 유효

* 금융기관에서 명의자에게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명의인에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 발생

■ 기타사항

① 신청접수는 온라인접수[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 앱(LH청약플러스)]으로 진행하며, **장애인 및 65세 이상의 고령자 등 인터넷 접수가 어려우신 분**에 한하여 현장접수를 도와드립니다.

② **공급신청은 신청접수일 마감시간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③ **우선공급 대상 중 철거민 등, 국가유공자 등, 비주택거주자 등은 관련기관의 요청에 의하며, 해당 우선공급 접수기간에 본인이 접수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④ 인터넷 PC 또는 모바일 청약시스템은 **인증서(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 인증서)를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 "청약신청 연습하기"를 통해 사전 연습이 가능합니다.

⑤ 신청자의 주소지는 새로운 주소(도로명 주소)만 사용하고 있으니,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신청하시어 안내문 수령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공급대상

■ 공급형별 공급호수

공급형별	세대 당 계약면적(㎡)					공급호수				해당동	구조 및 난방	입주예정
	주거전용	주거공용	그 밖의 공용면적		합계	계	우선공급	일반공급	주거약자용			
			기타공용	주차장								
총계						40	22	16	2			
39A	39.24	17.6983	6.9937	-	63.9320	17	10	7	-	101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 개별난방	'27.02 (예정)
39B (주거약자용)	39.56	18.0142	7.0507	-	64.6249	2	-	-	2	101		
42A	42.76	19.3137	7.6210	-	69.6947	21	12	9	-	101		

- 주거약자용 주택(39B형-3층)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3층 이하에 공급됩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고,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동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 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공급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계약체결**합니다.
- 총 주차대수는 지상 33대(지상주차장 8대, 부설주차장 10대(전기차충전시설 2대 포함), 공공주차장 15대)입니다.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주차대수 및 주차단위구획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부설주차장 위치는 주동 출입구에서 약 160m 거리(도보)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 시기는 2027년 02월 예정입니다.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 입주자격 구분별 배정호수

주택 신청은 반드시 공급형 및 입주자격 구분별 공급물량이 있는 유형만 신청가능하고, 공급물량이 없는 유형은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신청 접수한 공급형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 신청구분별(우선공급, 일반공급, 주거약자용 주택) 신청 마감시간 전까지 입력 및 저장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격 구분별 상세 신청자격은 「5.입주자격 구분별 신청자격」(공고문 16~24페이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급형별	계	우선공급										일반공급 (*8)	주거약자
		철거민 등	국가유공자 등 (*1)	북한이탈주민 등 (*2)	다자녀가구 등 (*3)	장애인	비주택거주자 등 (*4)	급여수급자 등 (*5)	청년 (*6)	신혼부부 등 (*7)	고령자		
총계	40	1	3	1	3	2	1	3	2	3	3	16	2
39A	17	-	2	-	-	1	1	2	2	-	2	7	-
39B (주거약자)	2	-	-	-	-	-	-	-	-	-	-	-	2
42A	21	1	1	1	3	1	-	1	-	3	1	9	-

(*1) **[국가유공자 등]**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2) **[북한이탈주민 등]** 북한이탈주민, 납북피해자, 중소기업근로자, 비정규직근로자, 가정폭력피해자, 성폭력피해자, 아동위탁가정, 범죄피해자, 탄광근로자, 파독근로자, 영구임대 입주자격 상실 퇴거자,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소년소녀가정, 해외거주재외동포, 등록포로
(*3) **[다자녀가구 등]** 미성년자녀 2명 이상의 가구(조손가정 포함),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4) **[비주택거주자 등]**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비주택거주자, 최저주거기준 미달 거주자, 무허가건축물 세입자
(*5) **[급여수급자 등]**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6) **[청년]**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미혼자, 미혼인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미혼인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자
(*7) **[신혼부부 등]**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자, 예비신혼부부, 혼인 중이며 6세 이하 자녀를 둔 자,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8) **[일반공급]** 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고령자, 일반

■ 기타사항

- 철거민 등, 국가유공자 등, 비주택거주자 등은 **지자체 등 관련기관의 요청에 의하며, 해당 우선공급 접수기간에 본인이 접수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 **우선공급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없이 동일한 입주자격 구분별 공급형의 일반공급 신청자로도 자동 신청(접수번호 2개 부여)**되며, 우선 및 일반공급 각각에 대하여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청약신청자가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 배수를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하며, 우선.일반공급 및 주거약자용 주택의 서류제출대상자로 중복하여 선정될 수 있습니다. **당첨자는 우선공급(주거약자용 주택), 일반공급 순으로 선정**됩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 신청자중 희망하는 자는 동일한 공급형의 일반공급의 「일반 계층」 신청자로 신청(접수번호 2개 부여, 온라인 및 현장 공급신청서 작성 시 '일반공급 전환 희망'란 체크하여야함)**되며, 주거약자용 주택 및 일반공급 각각에 대하여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일반공급 대상호수는 **우선공급 신청 미달로 인한 잔여호수 일반공급 전환**으로 증가될 수 있습니다.

2. 임대조건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대비 입주세대 월평균소득의 비율에 따라 시세 대비 임대료율을 차등 적용(35~90%)하여, **동일 공급형 임에도 불구하고 입주세대 월평균소득 수준에 따라 임대조건이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소득금액(세전금액)을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임대조건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된 소득금액에 따라 결정되며, **임대차기간 중 변경되지 않습니다.**

■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년 기준 금액)

[단위 : 원/월]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이하)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기타 소득구간				
	~30%	~50%	~70%	~100%	~110%	~120%	~130%	~150%	~160%	~170%	~180%	~190%	~200%
1인	769,271	1,282,119	1,794,967	2,564,238	2,820,662	3,077,086	3,333,509	3,846,357	4,102,781	4,359,205	4,615,628	4,872,052	5,128,476
2인	1,259,788	2,099,646	2,939,504	4,199,292	4,619,221	5,039,150	5,459,080	6,298,938	6,718,867	7,138,796	7,558,726	7,978,655	8,398,584
3인	1,607,711	2,679,518	3,751,325	5,359,036	5,894,940	6,430,843	6,966,747	8,038,554	8,574,458	9,110,361	9,646,265	10,182,168	10,718,072
4인	1,948,421	3,247,369	4,546,317	6,494,738	7,144,212	7,793,686	8,443,159	9,742,107	10,391,581	11,041,055	11,690,528	12,340,002	12,989,476
5인	2,267,016	3,778,360	5,289,703	7,556,719	8,312,391	9,068,063	9,823,735	11,335,079	12,090,750	12,846,422	13,602,094	14,357,766	15,113,438
6인	2,566,786	4,277,976	5,989,166	8,555,952	9,411,547	10,267,142	11,122,738	12,833,928	13,689,523	14,545,118	15,400,714	16,256,309	17,111,904
7인	2,854,545	4,757,575	6,660,605	9,515,150	10,466,665	11,418,180	12,369,695	14,272,725	15,224,240	16,175,755	17,127,270	18,078,785	19,030,300
8인	3,142,304	5,237,174	7,332,044	10,474,348	11,521,783	12,569,218	13,616,652	15,711,522	16,758,957	17,806,392	18,853,826	19,901,261	20,948,696

- 8인을 초과하는 가구의 기준소득은 1인 증가 시마다, 959,198원씩 증가합니다.
- (사례) 신청자의 세대구성원수가 3인 가구이면서 월평균소득이 4,000,000원인 경우에는 4구간 임대조건 적용

■ 공급형·소득구간별 임대조건

- **공급형·소득구간별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 모집공고일(2026.05.28.) 현재 기준으로 산출된 금액**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어 입주 순번이 도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해당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소득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받으며,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금액을 모두 합산한 세전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자세한 사항은「4. 입주자격」중 소득기준 및 산정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형·소득구간별 임대조건에도 불구하고, **아래에 해당하는 입주자의 경우**에는 구간별 임대조건을「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제7조제3항에 따라 환산한 금액이 **해당 시점의 주거급여 기준임대료(「주거급여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기준임대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임대조건을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입주자 중 주거급여를 받지 않는 입주자의 경우에는「영구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산정기준」제2호 가목에 따른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14.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의 임대조건 상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임대조건 상한 대상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를 대상으로 계약체결 전 별도 안내 예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3 제1호 가목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아래의 신청자】

① **생계·의료급여수급자**
②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국가유공자 등**
③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등록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④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이율 연6.0%,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 시 이율 연3.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1 【39㎡A, 39㎡B】 구간별 임대조건

[단위 : 원/월]

구간	임대조건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계	계약금(5%)	잔금(95%)					
1구간	12,436,000	621,800	11,814,200	121,050	+	-	12,436,000	121,050
					-	8,000,000	4,436,000	144,380
2구간	14,212,000	710,600	13,501,400	138,350	+	-	14,212,000	138,350
					-	10,000,000	4,212,000	167,510
3구간	17,766,000	888,300	16,877,700	172,940	+	7,000,000	24,766,000	137,940
					-	12,000,000	5,766,000	207,940
4구간	23,095,000	1,154,750	21,940,250	224,820	+	17,000,000	40,095,000	139,820
					-	16,000,000	7,095,000	271,480
5구간	28,425,000	1,421,250	27,003,750	276,700	+	28,000,000	56,425,000	136,700
					-	20,000,000	8,425,000	335,030
6구간 (기타소득구간 포함)	31,978,000	1,598,900	30,379,100	311,290	+	35,000,000	66,978,000	136,290
					-	22,000,000	9,978,000	375,450

2 【42㎡A】 구간별 임대조건

[단위 : 원/월]

구간	임대조건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계	계약금(5%)	잔금(95%)					
1구간	13,494,000	674,700	12,819,300	131,360	+	-	13,494,000	131,360
					-	9,000,000	4,494,000	157,610
2구간	15,422,000	771,100	14,650,900	150,120	+	-	15,422,000	150,120
					-	11,000,000	4,422,000	182,200
3구간	19,278,000	963,900	18,314,100	187,660	+	2,,000,000	21,278,000	177,660
					-	13,000,000	6,278,000	225,570
4구간	25,061,000	1,253,050	23,807,950	243,950	+	14,000,000	39,061,000	173,950
					-	17,000,000	8,061,000	293,530
5구간	30,844,000	1,542,200	29,301,800	300,250	+	25,000,000	55,844,000	175,250
					-	22,000,000	8,844,000	364,410
6구간 (기타소득구간 포함)	34,700,000	1,735,000	32,965,000	337,790	+	33,000,000	67,700,000	172,790
					-	24,000,000	10,700,000	407,790

3.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공급일정

신청접수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서류제출기간	당첨자 발표	계약체결
[인터넷 접수] **'26.06.09.(화) 10시 ~ 06.11.(목) 17시** ※ 신청기간 내 24시간 인터넷 신청 가능 (단, 시작일과 마감일 제외)	**'26.06.25.(목)** 15시 이후	**'26.06.29.(월) ~ 07.01.(수)** **※ '26.07.01.(수)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함**	**'26.10.07.(수)** 15시 이후	**[전자계약]** **'26.10.27.(화) 10시 ~ 10.29.(목) 17시**
온라인 :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현장접수] **'26..06.11.(목) 13시 ~ 16시**				**[현장계약]** **'26.10.29.(목) 13시~16시**
현장 : 거창소만주공아파트	LH청약플러스 (apply.lh.or.kr)	등기우편 제출	LH청약플러스	현장 : 추후 개별안내

- 현장 신청접수 장소 : 거창소만주공아파트 1층 주민공동시설(주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소만2길 62)
-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 방법 :「7. 인터넷 청약자 중 서류제출대상자 청약서류 제출방법 안내」 참조
- 입주자격 검증조사가 지연될 경우 당첨자 발표, 계약체결 등 일정이 연기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공지사항은 LH청약플러스 공지사항에 별도 게시 예정입니다.

신청방법

고객님의 신청 편의를 위하여 우리공사에서는 **인터넷(PC 및 모바일)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장시간 대기 및 혼잡에 따른 불편함이 있으니, **인터넷 (PC 또는 모바일)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객께서는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등본, 초본 및 기타 증빙서류 등(신분증 및 신청에 필요한 서류일체)을 지참하시고 현장 방문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 신청접수는 **온라인접수**[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 앱(LH청약플러스)]로 진행하며, **장애인 및 65세 이상의 고령자 등 온라인 접수가 어려우신 분에 한하여 현장접수**가 가능합니다.
- 우선공급 대상 중 **철거민 등, 국가유공자 등, 비주택거주자 등은 지자체 등 관련기관의 요청**에 의하며, 해당 **우선공급 접수기간(온라인 '26.06.09~06.11, 현장 '26.06.11.)에 접수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 **신청(수정)접수는 신청자격별(우선공급, 일반공급, 주거약자용 주택) 지정된 접수기간 동안에만 신청(수정)이 가능**하며, **취소 및 수정은 각 접수기간 내에만 가능하오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마감이 임박한 시간에는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미리 여유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서 작성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나,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를 잘못 작성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자께서는 모집공고문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청약신청에 필요한 신청 서류를 사전에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신청자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통장 납입회차는 통장에 나타난 회차 기준이 아닌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회차 기준**으로 선정하오니 아래 조회방법에 따라 미리 순위 등을 확인하시어 탈락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주택] 주택명 : 거창숙박시설 정비사업 A1BL 통합공공임대주택, 주택관리번호 : 2026000222

구분	조회방법
인터넷발급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순위(가입) 확인서 선택 → 청약통장순위확인서 종류선택 → 공동인증서 본인 확인 → 청약신청주택 선택 → 거주지 선택 → 연락처 입력 → 발급신청 후 내역 확인
인터넷이 불가능한 경우	**청약통장 가입은행 방문** → 청약통장순위(가입) 확인서 발급 → 납입인정 금액 및 회차 확인

- 인터넷(PC 또는 모바일) 신청은 신청자가 신청(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 등 착오입력에 따른 당첨 탈락 및 신청 시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거짓 신청(입력)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정확한 신청(입력)을 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 인터넷(PC 또는 모바일) 신청자께서는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 **2026.06.25.(목) 15시 이후에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되었는지 여부를 필히 확인**하셔야 하며,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되신 신청자께서는 **우리공사가 지정한 날까지 인터넷(PC 또는 모바일) 또는 등기우편으로 우리공사가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에서 제외**합니다.

[서류제출대상자 확인방법]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 청약 > 청약결과 확인 > 서류제출대상자 명단

※ **현장 방문신청자께서는 접수신청 시 해당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서류제출대상자는 모집호수의 일정배수를 선정**하며, 자격검증 후에 적격자가 모집인원 초과 또는 부적격 판정 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예비신혼부부는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 시 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하고,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아울러, 입주 전까지 신청 당시 기재한 **예비 배우자와의 혼인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공급계약은 해제**됩니다.
- **임신 또는 입양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입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 임신, 불법낙태, 입주 전 파양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은 해제**됩니다.

- 임신부부 출산 관련 서류 : 출생증명서, 유산 관련 진단서 등
 (단,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임신상태 유지 시,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제출)
- 입양부부 입양유지 확인서류 :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

■ PC 신청방법 (인증서 준비 → LH청약플러스 접속 → 신청접수 → 신청완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
인증서 로그인	청약-임대주택-청약신청 클릭	지구(블록) 및 주택형 선택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	청약신청서 작성	신청내용 확인	청약신청서 제출

- 인터넷 청약신청을 하시는 고객께서는 **전자공동인증서**(반드시 개인용 공동인증서로 발급) **또는 민간인증서(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발급 완료**하셔야 합니다.
- 공동인증서는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전자인증㈜, 한국정보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금융기관으로부터 인터넷뱅킹 용도의 공동인증서 사용 가능)
- 신청접수 처리할 PC에서 신청 전에 **LH청약플러스의 「청약연습하기」로 충분히 모의연습을 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바일 신청방법 (인증서 준비 → LH청약플러스 앱(App) 설치 → 신청접수 → 신청완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
인증서 로그인	청약-임대주택-청약신청 클릭	지구(블록) 및 주택형 선택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	청약신청서 작성	신청내용 확인	청약신청서 제출

-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에 **'LH청약플러스' 앱(App)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설치방법 : 아이폰(IOS) → 앱스토어에서 검색 및 설치 / 안드로이드폰 → 구글플레이(Google Play)에서 검색 및 설치)
- 모바일신청을 하시는 고객께서는 반드시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에 공동인증서가 설치되어 있거나 민간인증서(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를** 발급하셔야 합니다.
 ※ (공동인증서 복사 방법)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 고객서비스 > 공동인증센터 > 공동인증서 복사
- 공동인증서는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전자인증㈜, 한국정보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금융기관으로부터 인터넷뱅킹 용도의 공동인증서 사용 가능)
- 모바일 신청은 O/S 및 브라우저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기기에서 불가할 수 있사오니, 사전에 모바일 신청이 가능한지 **LH청약플러스 앱(App)의 「청약연습하기」로 확인**하시기 바라며, 시스템 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신청을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모바일 신청의 경우, 와이파이 환경이 아닌 경우 신청과정에서 데이터사용으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입주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2026.05.28.) 현재 **①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②자산·소득 기준**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5의2에 따른 **입주자격 구분별 신청자격을 충족한 자(「5. 입주자격 구분별 신청자격」 참조)**에게 **③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다만,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 과거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 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는 자가 있는 경우 입주자로 선정이 불가합니다.

※ **'자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의3호에 따른 **'신청자의 세대구성원인 자녀'와 '태아'를 의미**하므로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하 이 공고문에서 같음)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주택소유여부 판정 기준

■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기준

- 「민법」상 미성년자(19세 미만)는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다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를 통해 미성년자도 공급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자녀를 양육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단, 자녀가 반드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야 함)
②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단, 형제자매가 반드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야 함)
③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
④ 청년, 예비신혼부부 및 우선공급 대상인 소년소녀가정의 경우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의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세대구성원 전원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검증(주택소유, 소득, 자산)의 대상**이 됩니다.

세대구성원	비고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주민등록 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청년 계층 및 혼인 중이 아닌 경우로서 단독세대주로 입주하려는 고령자 계층의 주택소유여부는 신청자 본인에 한하여 검증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주택소유여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검증**합니다.
- **아동위탁가정은 세대구성원에 위탁 아동을 포함**하여 검증합니다.

•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에 포함되며, **신청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외국인 배우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함
• 외국인 직계존·비속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은 공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다음의 자는 해당 세대구성원에서 제외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다. 그 밖에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세대구성원의 무주택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르며, 국토교통부 주택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해 **주택소유가 확인되어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처리하며,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주택소유여부 판정 기준

• 주택소유여부는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 조회를 통해 확인합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주택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여야 하며, **입주 후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갱신계약이 거절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 소유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 등', '분양권 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

• 주택 및 분양권 등의 소유 기준일

- 주택의 경우(①과 ②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①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②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③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분양권 등의 경우
 ①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공급계약체결일
 ② (분양권 등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③ (분양권 등의 상속·증여 등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변경일

• 주택 및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에 유의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L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주택공급 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⑥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 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이거나,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⑦ 무허가 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 (소명방법)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⑧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 (단,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

⑨ 매매 외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 등을 취득한 경우

⑩ 보유한 분양권 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주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⑪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일 것

>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 내지 제3호에 따른 주택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가목 내지 다목에 따른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나목 내지 다목에 따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나. 주거전용면적이 60㎡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중 빠른 날)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자산보유기준 및 산정방법

■ 자산보유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하여 별도로 제정.고시된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세대구성원 전원의 보유자산 가액 합계(자동차는 개별 자동차가액으로 판단)가 아래의 기준금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구 분	출산자녀수(미성년자에 한하며, 태아 포함)		
	0명 (기준)	1명 (기준+10%p)	2명 이상 (기준+20%p)
총자산가액	345,000,000원 이하	379,000,000원 이하	413,000,000원 이하
자동차가액	45,420,000원 이하	49,960,000원 이하	54,510,000원 이하

(*) **출산자녀수는 '23. 3.28. 이후에 출산한 미성년 자녀(공고일 기준 태아 포함)수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일 이전 출생한 기존 미성년자녀도 포함하여 최대 2자녀로 인정합니다. 자녀 1인당 10%p(2자녀 이상은 20%p)를 자산보유기준에 가산**하여 자격검증을 실시합니다. (단,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동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며, 갱신계약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 이하 동일)

- **청년 계층의 보유 자산가액은 신청자 본인에 한하여 검증**합니다. **다만, 세대원이 있는 세대의 세대주인 경우에는 세대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검증**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보유 자산가액은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 **고령자 계층의 보유 자산가액은 세대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혼인중이 아니면서 단독세대주로 입주하려는 경우 포함)
- 자산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입주자격의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처리하며,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주택,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금융부채 외 부채의 산정시점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이며,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산정시점은 조사기준일입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산정방법

구분		산정방법
총자산	부동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 건축물 : 공시가격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 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 이 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자동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고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
	금융자산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 최종 시세가액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 액면가액 • 연금저축 : 잔액 또는 총납입액 • 보험증권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기타자산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부채	※ 부채는 총자산 산정 시 자산합계 금액에서 차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가 인수한 부실채권으로 공사가 증명한 부채 • 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자동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고,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 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 자동차 가격 적용기준
-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 자동차 출고(취득)가격(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
-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취.등록세 납부 영수증, 지방세납부확인서 등에 표시된 과세표준액
- 경과년수는 연식이 아닌 최초 신규등록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퍼센트씩 감가상각

- 자산항목에 대한 설명 및 자료 출처는 「17.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제공 소득·재산 항목 설명 및 자료 출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기준 및 산정방법

■ 소득기준

- 소득금액은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금액을 모두 합산한 세전 금액으로, 신청자 세대의 월평균소득금액이 기준중위소득 대비 아래의 기준비율 이하**이어야 합니다. 자세한 소득기준금액은 「5. 입주자격 구분별 신청자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출산자녀수(미성년자에 한하며, 태아 포함)					
		0명 (기준)		1명 (+10%p)		2명 이상 (+20%p)	
		우선공급	일반공급	우선공급	일반공급	우선공급	일반공급
세대원수 (태아 포함)	1인 (+20%p)	120%	170%	-	-	-	-
	2인 (+10%p)	110%	160%	120%	170%	-	-
	3인 이상 (기준)	100%	150%	110%	160%	120%	170%

(*) 세대원수는 세대구성원 전원을 의미하며, **외국인 배우자와 임신 중인 경우에는 태아를 포함**합니다.

(*) 일반공급 "(예비)신혼부부" 자격으로 신청한 자 중 신청자 및 배우자 모두가 소득(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상기 비율에 30%p를 추가 우대

- **청년 계층의 소득금액은 신청자 본인에 한하여 검증**합니다. **다만, 세대원이 있는 세대의 세대주인 경우에는 세대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검증**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소득금액은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 **고령자 계층의 소득금액은 세대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혼인중이 아니면서 단독세대주로 입주하려는 경우 포함)
- 소득금액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받는 소득정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이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처리하며,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년 기준 금액**)

[단위 : 원/월]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이하)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기타 소득구간				
	~30%	~50%	~70%	~100%	~110%	~120%	~130%	~150%	~160%	~170%	~180%	~190%	~200%
1인	769,271	1,282,119	1,794,967	2,564,238	2,820,662	3,077,086	3,333,509	3,846,357	4,102,781	4,359,205	4,615,628	4,872,052	5,128,476
2인	1,259,788	2,099,646	2,939,504	4,199,292	4,619,221	5,039,150	5,459,080	6,298,938	6,718,867	7,138,796	7,558,726	7,978,655	8,398,584
3인	1,607,711	2,679,518	3,751,325	5,359,036	5,894,940	6,430,843	6,966,747	8,038,554	8,574,458	9,110,361	9,646,265	10,182,168	10,718,072
4인	1,948,421	3,247,369	4,546,317	6,494,738	7,144,212	7,793,686	8,443,159	9,742,107	10,391,581	11,041,055	11,690,528	12,340,002	12,989,476
5인	2,267,016	3,778,360	5,289,703	7,556,719	8,312,391	9,068,063	9,823,735	11,335,079	12,090,750	12,846,422	13,602,094	14,357,766	15,113,438
6인	2,566,786	4,277,976	5,989,166	8,555,952	9,411,547	10,267,142	11,122,738	12,833,928	13,689,523	14,545,118	15,400,714	16,256,309	17,111,904
7인	2,854,545	4,757,575	6,660,605	9,515,150	10,466,665	11,418,180	12,369,695	14,272,725	15,224,240	16,175,755	17,127,270	18,078,785	19,030,300
8인	3,142,304	5,237,174	7,332,044	10,474,348	11,521,783	12,569,218	13,616,652	15,711,522	16,758,957	17,806,392	18,853,826	19,901,261	20,948,696

• 8인을 초과하는 가구의 기준소득은 1인 증가 시마다, 959,198원씩 증가합니다.

• (사례) 신청자의 세대구성원수가 3인 가구이면서 월평균소득이 4,000,000원인 경우에는 4구간 임대조건 적용

■ 산정방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원의 아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하며, 소득항목에 대한 설명 및 자료 출처는 「17.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제공 소득·재산 항목 설명 및 자료 출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정방법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1세대 1주택 기준 공급

• **1세대(세대구성원) 1주택 신청·공급원칙**에 따라, **1세대 내에서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처리**됩니다.

- 「부(세대주)+자(세대원)」인 세대에서 부와 자가 각각 고령자(부), 청년(자)의 자격으로 청약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처리됩니다.
- 다만, 세대주가 아닌 청년의 경우, 1세대 내에서 세대원인 청년계층이 각각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예 : 부(세대주) + 형(세대원) + 동생(세대원) → 청년(형), 청년(동생) 각각 신청 가능)

• **세대주가 아닌 청년, 혼인 중이 아닌 경우로서 단독세대주로 입주하려는 고령자 및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시까지 세대를 분리**한 후, 우리공사에 주민등록등본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임대주택에 기 거주중인 임차인의 배우자는 세대분리 하더라도 중복입주에 해당**하므로 기 거주중인 임대주택을 해당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명도하여야 합니다.

5. 입주자격 구분별 신청자격

◇ 우선공급, 일반공급, 주거약자용 주택의 자격요건 및 신청서류 상에 기재된 자격서류의 발급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시고 접수하시기 바라며, **신청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고, **다음의 입주자격 구분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우선공급 철거민 등 일부 계층은 소득·자산 등의 예외가 적용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입주자격 구분별 상세 신청자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의3호에 따른 **'신청자의 세대구성원인 자녀'와 '태아'를 의미**하므로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공급

■ 신청가능 소득·자산기준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 @% (우대비율, 우대항목 중복 시 합산 적용)**

① 세대원수 우대비율 : 1인 20%p, 2인 10%p 가산
② 출산자녀수 우대비율 : 2인 이상 20%p, 1인 10%p 가산
※ **출산자녀는 '23. 3.28 이후 출산한 미성년자녀(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산한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일 이전 출생한 기존 미성년자녀도 포함하여 최대 2자녀로 인정**
(단,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동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이하 동일)

• **자산기준** : **총자산 345,000,000원 및 자동차 45,420,000원 이하 + @%**

② 출산자녀수 우대비율 : 2인 이상 20%p, 1인 10%p 가산

구분	우대항목		최종 소득,자산기준 (한도)		
	① 세대원수	② 출산자녀수 (미성년자에 한하며 태아 포함)	소득기준	자산기준	
				총자산가액	자동차가액
우선공급	1인	0인	120%	345,000,000원	45,420,000원
	2인	0인	110%	345,000,000원	45,420,000원
		1인	120%	379,000,000원	49,960,000원
	3인 이상	0인	100%	345,000,000원	45,420,000원
		1인	110%	379,000,000원	49,960,000원
		2인 이상	120%	413,000,000원	54,510,000원

■ 세부 신청자격

❶ 철거민 등

【유의사항】 관련 기관의 추천과 함께, 우선공급 접수기간에 본인이 별도로 신청하여야 함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부터 ㉲까지 및 ㉳에 따라 우선공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을 위한 고시 등이 있은 날 현재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이어야 하고, ㉵에 따라 우선공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재해가 발생한 날 현재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하며, ㉶에 따라 우선공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고시한 날 현재 해당 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확인하는 경우로 한정함

※ ㉮, ㉯, ㉰, ㉱(GB해제 만 해당), ㉲, ㉶, ㉷의 경우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 ㉯, ㉰, ㉱, ㉲, ㉶, ㉷의 경우에는 자산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공공주택사업자가 해당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철거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에는 주택의 소유자 포함)

㉰ 해당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의 도시·군계획시설사업(「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

㉱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퍼센트(1~2인 가구 및 출산가구의 경우에는 우대비율을 가산) 이하인 사람. 이 경우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또는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해당 공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7조제1호에 따라 분양주택을 특별공급받은 사람은 제외) 또는 세입자의 경우에는 소득요건은 적용하지 않음

㉲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연접한 시·군·자치구에서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같은 법 제6조제3항, 제7조제2항 및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이 포함된 경우로 한정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

㉳ 재해로 인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퍼센트(1~2인 가구 및 출산가구의 경우에는 우대비율을 가산) 이하인 사람

㉴ 시·도지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주택의 내력구조부 등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여 해당 거주자의 보호를 위하여 이주 및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퍼센트(1~2인 가구 및 출산가구의 경우에는 우대비율을 가산) 이하인 사람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주거환경 개선 및 취락 정비가 필요하여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게 되는 타인의 토지에 소재한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퍼센트(1~2인 가구 및 출산가구의 경우에는 우대비율을 가산) 이하인 사람

㉶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된 임대주택거주자로서 사업주체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해당 주택에서 퇴거했거나 퇴거해야 하는 사람 중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을 받은 사람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부터 ㉲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은 제외한다]을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시행을 위한 고시 등이 있은 날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사람 및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 중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을 받은 사람

❷ 국가유공자 등

【유의사항】 관련 기관의 추천과 함께, 우선공급 접수기간에 본인이 별도로 신청하여야 함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퍼센트(1~2인 가구 및 출산가구의 경우에는 우대비율을 가산) 이하**인 사람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종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거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 또는 그 유족

❸ 장기복무 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등

【유의사항】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관련 기관의 추천과 함께, 우선공급 접수기간에 본인이 별도로 신청하여야 함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퍼센트(1~2인 가구 및 출산가구의 경우에는 우대비율을 가산) 이하**인 사람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의 경우에는 자산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납북피해자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업종의 중소기업은 제외한다)에 종사하는 근로자
㉲ 비정규직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우선공급이 필요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이 경우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의 무주택 및 소득요건은 적용하지 않는다.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성폭력피해자 또는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는 가족으로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아동복지법」 제3조제6호에 따른 가정위탁을 통하여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조부모 또는 친인척으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추천하는 사람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범죄피해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4에 따른 탄광근로자이거나 탄광근로자였던 사람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유족으로서 폐광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한 사람
㉸ 1963년 12월 21일부터 197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독일연방공화국으로 진출했던 근로자 중 간호사, 광부 및 이에 준하는 직업에 종사한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
㉹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로서 입주자격 상실 등의 사유로 그 주택에서 퇴거하는 사람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①, ②, ③, ④의 경우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①의 경우에는 자산요건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①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안전 지원대상자
② 소년·소녀가정으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추천하는 사람
③ 투자촉진 또는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해외에서 15년 이상 거주한 후 대한민국에 영구귀국 또는 귀화하는 재외동포에게 주택의 특별공급이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시·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④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❹ 다자녀가구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퍼센트(1~2인 가구 및 출산가구의 경우에는 우대비율을 가산) 이하**인 사람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㉑의 경우에는 세대분리된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함

㉮ 2명 이상의 미성년자인 자녀를 둔 사람 (단, 이혼, 재혼의 경우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만 인정)
㉯ 2명 이상의 미성년자인 직계비속을 둔 사람(조부모와 손자녀로만 구성된 세대에 한하며,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1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있는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❺ 장애인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퍼센트(1~2인 가구 및 출산가구의 경우에는 우대비율을 가산) 이하**인 사람 중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사람(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❻ 비주택거주자 등

【유의사항】 관련 기관의 추천과 함께, 우선공급 접수기간에 본인이 별도로 신청하여야 함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퍼센트(1~2인 가구 및 출산가구의 경우에는 우대비율을 가산) 이하**인 사람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한 차례로 한정)**

㉮ 비닐·부직포 등으로 건축되어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주거의 용도로 제공되는 비닐간이공작물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의 공고 당시 해당 주택지구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서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추천하는 사람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노숙인시설(노숙인복지지설,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컨테이너, 움막, PC방, 만화방, 침수 피해가 우려되거나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지하층 등에 해당하는 주거환경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서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추천하는 사람
㉰ 「주거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고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미성년자인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추천하는 사람
㉱ 공익사업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당시 그 공익사업지구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하여 주거이전비를 보상받는 무허가건축물등에 입주한 세입자

❼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수급자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❽ 청년

【유의사항】 청년계층의 소득 및 자산은 신청자 본인에 한하여 검증. 다만, 세대원이 있는 세대의 세대주인 경우에는 세대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검증하되, 주택소유는 신청자 본인만 검증

- **무주택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1) 공급신청자(세대원이 있는 세대의 세대주인 경우에는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퍼센트** (1~2인 가구 및 출산가구의 경우에는 우대비율을 가산) 이하일 것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8세 이상 39세 이하**일 것 **(출생일 : 1986.05.29.~2008.05.28.)**
 ㉯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 또는 가정위탁이 종료 예정이거나 퇴소 또는 종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지설에서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3) **혼인 중이 아닐 것**

❾ 신혼부부・한부모가족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전 배우자였던 사람과 재혼하는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 이내인 사람**
 ㉯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6세 이하 자녀(2019.05.29. 이후 출생, 태아 포함)**를 둔 사람
 ㉱ **6세 이하 자녀(2019.05.29. 이후 출생)를 둔 한부모가족** (자녀가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2)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일 것
(3)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월평균소득의 합계)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퍼센트**(2인 가구 및 출산가구의 경우에는 우대비율을 가산) 이하일 것

❿ 고령자

【유의사항】 혼인 중이 아닌 경우로서 단독세대주로 입주하려는 경우에도 소득 및 자산은 세대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검증

- **무주택세대구성원(혼인 중이 아닌 경우로서 단독세대주로 입주하려는 사람의 경우에는 무주택자)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퍼센트**(1~2인 가구 및 출산가구의 경우에는 우대비율을 가산) 이하일 것
㉯ **65세 이상(1961.05.28. 이전 출생)일 것**

일반공급

■ 신청가능 소득 • 자산기준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 + @% (우대비율, 우대항목 중복 시 합산 적용)**

① 신혼부부 맞벌이 우대비율 : 30%p 가산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으로 당첨된 자만 적용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는 적용 제외)
※ 맞벌이는「소득세법」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의미
② 세대원수 우대비율 : 1인 20%p, 2인 10%p 가산
③ 출산자녀수 우대비율 : 2인 이상 20%p, 1인 10%p 가산
※ **출산자녀는 '23. 3.28 이후 출산한 자녀(공고일 기준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일 이전 출생한 기존 미성년자녀도 포함하여 최대 2자녀로 인정**
(단,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동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이하 동일)

• **자산기준** : **총자산 345,000,000원 및 자동차 45,420,000원 이하 + @%**

③ 출산자녀수 우대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p, 출산자녀 1인 10%p 가산

입주자격 구분		우대항목			최종 소득,자산기준 (한도)		
		①신혼 맞벌이	②세대원수	③출산자녀수 (태아포함)	소득 기준	자산기준	
대분류	소분류					총자산가액	자동차가액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2인	0인	160%	345,000,000원	45,420,000원
				1인	170%	379,000,000원	49,960,000원
			3인 이상	0인	150%	345,000,000원	45,420,000원
				1인	160%	379,000,000원	49,960,000원
				2인 이상	170%	413,000,000원	54,510,000원
	그 외	×	2인	0인	160%	345,000,000원	45,420,000원
			3인	0인	150%	345,000,000원	45,420,000원
				1인	160%	379,000,000원	49,960,000원
			4인 이상	0인	150%	345,000,000원	45,420,000원
				1인	160%	379,000,000원	49,960,000원
				2인 이상	170%	413,000,000원	54,510,000원
		○	2인	0인	190%	345,000,000원	45,420,000원
			3인	0인	180%	345,000,000원	45,420,000원
				1인	190%	379,000,000원	49,960,000원
			4인 이상	0인	180%	345,000,000원	45,420,000원
				1인	190%	379,000,000원	49,960,000원
				2인 이상	200%	413,000,000원	54,510,000원
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을 제외한 모든 계층		×	1인	0인	170%	345,000,000원	45,420,000원
			2인	0인	160%	345,000,000원	45,420,000원
				1인	170%	379,000,000원	49,960,000원
			3인 이상	0인	150%	345,000,000원	45,420,000원
				1인	160%	379,000,000원	49,960,000원
				2인 이상	170%	413,000,000원	54,510,000원

■ 세부 신청자격

❶ 청년

【유의사항】 청년계층의 소득 및 자산은 신청자 본인에 한하여 검증. 다만, 세대원이 있는 세대의 세대주인 경우에는 세대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검증하되, 주택소유는 신청자 본인만 검증

- **무주택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 공급신청자(세대원이 있는 세대의 세대주인 경우에는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50퍼센트**(1~2인 가구 및 출산가구의 경우에는 우대비율을 가산) 이하일 것
㉯ **18세 이상 39세 이하**일 것 **(출생일 : 1986.05.29. ~ 2008.05.28.)**
㉰ **혼인 중이 아닐 것**

❷ 신혼부부・한부모가족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전 배우자였던 사람과 재혼하는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 이내인 사람**
 ㉯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6세 이하 자녀(2019.05.29. 이후 출생)**를 둔 사람 (태아 포함)
 ㉱ **6세 이하 자녀(2019.05.29. 이후 출생)를 둔 한부모가족** (자녀가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2)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일 것
(3)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월평균소득의 합계)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퍼센트**(맞벌이, 2인 가구 및 출산가구의 경우에는 우대비율을 가산) 이하일 것

❸ 고령자

【유의사항】 혼인 중이 아닌 경우로서 단독세대주로 입주하려는 경우에도 소득 및 자산은 세대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검증

- **무주택세대구성원(혼인 중이 아닌 경우로서 단독세대주로 입주하려는 사람의 경우에는 무주택자)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퍼센트**(1~2인 가구 및 출산가구의 경우에는 우대비율을 가산) 이하일 것
㉯ **65세 이상(1961.05.28. 이전 출생)일 것**

❹ 일반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퍼센트**(1~2인 가구 및 출산가구의 경우에는 우대비율을 가산) 이하일 것

주거약자용 주택공급

■ 신청가능 소득・자산기준표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 + @% (우대비율, 우대항목 중복 시 합산 적용)**

① 세대원수 우대비율 : 1인 20%p, 2인 10%p 가산
② 출산자녀수 우대비율 : 2인 이상 20%p, 1인 10%p 가산
※ **출산자녀는 '23. 3.28 이후 출산한 자녀(공고일 기준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일 이전 출생한 기존 미성년자녀도 포함하여 최대 2자녀로 인정**
(단,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동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이하 동일)

• **자산기준** : **총자산 345,000,000원 및 자동차 45,420,000원 이하 + @%**

출산자녀수 우대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p, 출산자녀 1인 10%p 가산

구분	우대항목		최종 소득,자산기준 (한도)		
	세대원수	출산자녀수 (태아포함)	소득기준	자산기준	
				총자산가액	자동차가액
주거약자용	1인	0인	170%	345,000,000원	45,420,000원
	2인	0인	160%	345,000,000원	45,420,000원
		1인	170%	379,000,000원	49,960,000원
	3인 이상	0인	150%	345,000,000원	45,420,000원
		1인	160%	379,000,000원	49,960,000원
		2인 이상	170%	413,000,000원	54,510,000원

■ 세부 신청자격

• **주거약자주택은 아래에 해당하는 자 중,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퍼센트 (1~2인 가구 및 출산가구의 경우에는 우대비율을 가산) 이하인 자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고령자(65세 이상인 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
㉴ 종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으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주거약자용 주택 당첨자에서 탈락 시 동일 형별 주거약자용外 주택 일반공급 신청자(일반 계층)로 전환을 신청할 경우 (공급신청서 작성 시 '일반공급 전환 희망'란 체크하여야 함)** 동일 공급형별 주거약자용外 주택 일반공급 신청자와 경쟁할 수 있습니다. **동일 공급형별 주거약자용外 주택 일반공급 신청자와 경쟁하여 당첨자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에는 주거약자용 주택의 예비자로서 경쟁**하게 됩니다.

• **동일 공급형별 주거약자용外 주택 일반공급 모집호수가 없는 경우**에는 주거약자용 주택 당첨자 탈락 시 동일 공급형별 주거약자용外 주택 일반공급 신청자의 해당 순위로 전환을 신청하더라도 무효 처리되고, 주거약자용 주택의 예비자로 경쟁하게 됩니다.

6. 신청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2026.05.28.)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이를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PC 또는 모바일 신청자는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기간에 제출**하여야 하며, **현장 신청 접수자는 접수시점에 일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시,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가 모두 표기**되도록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자격검증을 위한 서류제출대상자 선정은 모집호수의 일정배수를 선정함에 따라,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위·변조 등으로 거짓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됩니다.

■ 기본 제출서류

구비서류		비 고	부수
【필수】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양식1)		· (대상자) 세대구성원 전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전원) ※ 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자필서명	1통
【필수】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양식4)		· (동의방법) 공고 시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자필서명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신청·접수가 거부됨**	1통
【필수】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양식2)		· 내용 확인 후, 신청자가 자필서명하여 제출 **※ 동의서 미제출 시, 신청·접수가 거부됩니다.**	1통
【필수】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양식3)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함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공사임대주택의 임차보증금일 경우 제출 불필요)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비상장주식 : 증권사 조회내역, 주식보관증 등 종목, 수량 및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출자금/출자지분 : 출자증서 사본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해지 처리될 수 있음**	1통
주민등록표 등본	**【필수】** 신청자 본인	·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표시되어야 함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1통
	[해당자만 제출] 해당자	· **(배우자)** 배우자와 주민등록표 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1통 추가 제출 · **(예비신혼부부)** 예비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추가 제출	

구비서류	비 고	부수
	·**(기타)**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주민등록표초본 **※ 우선공급 대상자 및 해당자는 반드시 제출**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도록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세대구성원(신청자 포함) · **우선공급 및 주거약자용 주택 신청자 중**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거창군 거주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 상 거창군에서의 거주기간이 확인되지 않는 자 · **우선공급 신청자 중**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 상 해당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자 (신청자와 동일세대인 경우에 한하며, 본인 및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의 주민등록초본 1통을 추가 제출)	1통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해당자만 제출]**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 등(ex 동거인) 무주택세대구성원 확인 필요한 경우 ※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외의 사람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세대원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출 ·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사람으로 주민등록표등본 상 피부양자의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사람은 피부양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출	1통
외국인등록증 사본 **[해당자만 제출]**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제출	1통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해당자만 제출]**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 · 기준 중위소득의 가구원수 산정 및 소득자산 검증 시, 태아(자녀)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우선공급, 주거약자용 주택 신청자 중 배점의 부양가족수, 미성년자녀수에서 태아(자녀)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정, 다자녀가구의 자격으로 주택을 신청하는 신청자 중 태아(자녀)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1통
입양관계 증명서 **[해당자만 제출]**	기준 중위소득의 가구원수 산정 및 소득자산 검증 시, 입양자녀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1통
감점 적용 배제 관련 서류 **[해당자만 제출]**	우선공급 및 주거약자용 주택 신청자 중, 입주자가 출산, 사망 또는 노부모 부양 등의 사유로 세대원 수가 변동되어 다른 면적으로 재신청하는 경우 · 출산 : 기본증명서 등 세대구성원의 출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사망 : 기본증명서 등 세대구성원의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노부모 부양 : 주민등록표등본	1통

■ **추가 제출서류 (해당하는 유형의 신청자 제출 / 중첩될 경우 1부만 제출)**

공급대상	제출서류	발급처
【국가유공자 등】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5·18 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자 또는 그 유족	국가보훈부에 신청	국가보훈부
【장기복무제대군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름	국가보훈부에 신청	국가보훈부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름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시·군·구청

【납북피해자】「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름	통합공공임대주택 신청용 납북피해자 확인서	통일부 (이산가족과)
【중소기업근로자】「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동법 제3조에 따른 업종의 중소기업은 제외)에 종사하는 근로자(법인등기부에 등재된 대표 및 이사는 제외)로서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위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서 재직한 기간이 5년 이상(동일한 중소기업에 재직한 경우 3년 이상)인 자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확인서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비정규직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우선공급 대상여부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발급처로 문의	(제출서류)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확인서 (발급처) - **기간직, 파견직 근로자**는 현 소속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 **일용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노무제공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가정폭력 피해자】「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로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자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주거지원시설) 입소(입주) 확인서	시·군·구청
【성폭력 피해자】「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성폭력피해자 또는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는 가족으로서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자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등 입소확인서	시·군·구청
【아동위탁가정】「아동복지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아동위탁가정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시장·군수·구청장의 추천서	시·군·구청
【범죄피해자】「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범죄피해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	통합공공임대주택 신청용 범죄피해자 확인증	주소지 관할 지방검찰청
【탄광근로자】「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4에 따른 탄광근로자이거나 탄광근로자였던 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폐광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한 자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확인서	주소지 관할 한국광해광업공단
【파독근로자】 1963년 12월21일부터 197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독일연방공화국(서독)으로 진출했던 근로자 중 간호사 광부 및 이에 준하는 직업에 종사한 사실이 인정되는 자 ※ 파독근로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기한 내에 입증서류를 제출하여 인정되는 자에 한하여 파독근로자 우선공급자격을 인정	출입국사실증명서	행정복지센터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로서 입주자격 상실 등의 사유로 그 주택에서 퇴거하는 사람(수급자가 아닌 자)	임대차계약서사본 또는 계약사실증명원	해당 관리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안전지원대상자	일본군위안부 결정통지서 사본 또는 생활안정지원대상자 확인서	성평등가족부
【소년소녀가정】 소년·소녀가정으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시장·군수·구청장의 추천서	시·군·구청
【해외거주 재외동포】 투자촉진 또는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해외에서 15년 이상 거주한 후 대한민국에 영구귀국 또는 귀화하는 재외동포에게 주택의 특별공급이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시·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시·도에 신청	시·도청
【귀환국군포로】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귀환용사증 사본	국방부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여 1년 이상 부양하고 있으나 제출한 주민등록표등본으로 부양기간을 확인할 수 없는 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자 ※ 단,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	- 직계존속(피부양자)의 주민등록표초본 - 피부양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행정복지센터
【한부모가정】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증명서	행정복지센터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장애인증명서,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행정복지센터
【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보상받는 무허가건축물등에 입주한 세입자	- 무허가건축물 등 세입자 확인 각서 - 사업주체 보상금 지급 내역서 등	공사 양식 해당 사업주체
【기초생활 보장제도 급여 수급자 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의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수급자 증명서	행정복지센터
【청년】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아동복지지설에서 퇴소 또는 가정위탁이 종료 예정이거나 퇴소 또는 종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확인서, 아동복지시설신고증 사본	아동복지시설 (시·군·구청)
【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신혼부부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행정복지센터
【신혼부부】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를 둔 자	(필수) 자녀의 기본증명서 (해당자) 입양관계증명서 / 임신진단서	행정복지센터,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정】 이혼, 사별 등의 사유로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정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자녀의 기본증명서 (해당자) 입양관계증명서 / 임신진단서	행정복지센터,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현재 혼인 중이 아님을 확인하기 위해 '상세내역'을 포함하여 발급** **※ 입주 시까지 혼인관계증명서 등 증빙을 추가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예비신혼부부 신청 확인서, 예비신혼부부 세대구성 확인서,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각자) 대표신청자의 예비배우자의 신분증 사본	공사 양식, 행정복지센터,
【주거약자용 주택 신청자】 ㉮~㉰ 중 해당하는 자격에 해당하는 경우 ㉮ 고령자(65세 이상인 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 ㉴ 종전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상이 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장애가 있는 신청자는 ㉯에 따른 증빙서류 추가 제출** **※ 사회취약계층(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는 관련 증명서 추가 제출**	㉮ 제출서류 없음 ㉯ 장애인등록증,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 국가유공자 확인원 ㉱ ('12.7.1전 등록자) 지원대상자 확인원 ('12.7.1이후 등록자)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 ㉴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확인원	㉮ - ㉯ 행정복지센터 ㉰ 국가보훈부(지청) ㉱ 국가보훈부(지청) ㉲ 국가보훈부(지청) ㉳ 국가보훈부(지청) ㉴ 국가보훈부(지청)

※ 서류가 중첩될 경우 1부만 제출

■ 임대조건 상한 대상자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발급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수급자 증명서	행정복지센터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화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자 또는 그 유족 및 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확인원	국가보훈부
	수급자 증명서	행정복지센터
	소득인정액 산정결과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등록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일본군위안부 결정통지서 사본	성평등가족부
	수급자 증명서	행정복지센터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증명서	행정복지센터
	수급자 증명서	

※ 미제출 시, 임대조건 상한대상에서 제외됨

■ **현장신청 시 추가 구비서류 (본인 또는 대리인)**

구분	구비서류
본인 직접 신청	①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배우자 대리 신청	① 본인(신청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신청자) 도장 ③ 본인(신청자)과의 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기타 대리인 신청 (*예비배우자 포함)	① (인감증명방식) - 본인(신청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증명서상의 도장일 것) - 본인(신청자)의 인감도장 ② (본인서명방식) - 본인(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본인(신청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③ 공통 :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7. 인터넷 청약자 중 서류제출대상자 청약서류 제출방법 안내

신청자 본인이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2026.06.25.(목), 15:00 이후)에 결과를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서류 제출기한 내**(2026.06.29.(월)~07.01.(수))**에 필요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서류제출 방법**

등기우편 접수	• 서류제출 기한 내 등기우편으로만(일반우편 불가) 접수 • 서류제출기간 마감일(**2026.07.01.**)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하게 접수처리되며, 서류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기한 내 미제출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예비)자에서 제외합니다. • [발송주소] (51430)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15, LH 경남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팀 거창숙박시설 정비사업 통합공공임대 담당자 앞 - 봉투 겉면에 "거창숙박시설 통합공공임대 서류제출"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입주자 선정방법

① 우선공급 및 주거약자용 주택 공급 신청자를 대상으로 입주자를 우선 선정 후, ② 우선공급 및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신청자(주거약자용 주택의 경우 일반공급 전환을 희망한 자에 한함) 중 일반공급 심사 대상자였던 자를 일반공급 신청자와 경쟁하여 일반공급 입주자를 선정하며, ③ 일정 규모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우선공급

• 우선공급 입주자격 구분별 배정호수 내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되, 경쟁 시 **①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신청자(경쟁시 추첨), ② 아래의 배점의 합계 점수가 높은 신청자(동일 배점 경쟁시 추첨)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다만, 장애인의 입주자 선정은 **① 장애정도가 심한 자(경쟁 시, 2세미만 자녀가구→배점→추첨), ②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경쟁시, 2세 미만 자녀가구→배점→추첨)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배점항목			3점	2점	1점	0점
1 해당 세대 월평균소득 (기준 중위소득 대비)	출산 자녀	0명	50%이하	50%초과 70%이하	70%초과 100%이하	100%초과
		1명	60%이하	60%초과 80%이하	80%초과 110%이하	110%초과
		2명 이상	70%이하	70%초과 90%이하	90%초과 120%이하	120%초과
2 부양가족 수 (신청자 본인 제외, 태아포함)			3인 이상	2인	1인	0인
3 해당 주택건설지역(거창군) 연속 거주기간			5년 이상	3년 이상 5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1년 미만
4 미성년자녀수 (19세 미만, 태아포함)			3명 이상	2명	1명	0명
5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24회 이상	12회 이상 24회 미만	6회 이상 12회 미만	6회 미만
6 공사 통합공공임대주택에 과거 계약사실이 있는 경우 감점 산정기준 가. 최근 1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5점) / 나. 최근 3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3점) * (기간산정) 과거 공사 통합공공임대주택 계약일로부터 금회 공급하는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 * 다수의 통합공공임대주택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계약일 적용 * 갱신계약은 제외하며, 입주자가 출산, 노부모부양, 사망 등의 사유로 가구원 수가 변동되어 다른 면적으로 재신청하는 경우 감점 적용을 배제						

- **해당 세대 월평균소득** 입주자모집공고일이 속하는 당해년도의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대비 **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 합계액 비율로 산출**합니다.
- **부양가족 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를 제외한 세대구성원 전원(태아 포함) + 신청자의 형제, 자매로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단,「민법」상 미성년자 또는 60세 이상인 자에 한함)
- **해당 주택건설지역** **해당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의 행정구역(거창군)**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지구 등이 둘 이상의 주택건설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구역 모두를 같은 주택건설지역으로 간주합니다. (해당지역 거주기간 중 주민등록이 말소된 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재등록일로부터 계속 거주기간을 산정)
- **미성년자녀수**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함. 이혼·재혼의 경우 전혼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만 인정하며, 조손가정인 경우에는 직계비속을 의미합니다.

- **철거민, 국가유공자 등, 장기복무제대군인, 비주택거주자 등은 지자체 등 관련기관의 통보 명단**에 따릅니다.
- **우선공급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없이 동일한 공급형별의 일반공급 신청자로도 자동 신청(접수번호 2개 부여)**되며, 우선공급 및 일반공급 각각에 대하여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우선 및 일반공급에 동시 입주자 선정 시, 우선공급 입주자로 간주)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신청 공급형 내에서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우리공사 자체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하며, 미신청, 미계약에 따른 잔여 동・호가 발생하여도 동・호 변경은 불가합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 공급

- 주거약자용 주택 배정호수 내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되, 경쟁 시 ① **아래의 배점의 합계 점수가 높은 신청자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동점일 경우 ②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배점항목	3점	2점	1점	0점
1 부양가족 수 (신청자 본인 제외, 태아포함)	3인 이상	2인	1인	0인
2 해당 주택건설지역(거창군) 연속 거주기간	5년 이상	3년 이상 5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1년 미만
3 장애정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4 사회취약계층 (3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 (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및 그 가구원 포함)			
5 공사 통합공공임대주택에 과거 계약사실이 있는 경우 감점 산정기준 가. 최근 1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5점) 나. 최근 3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3점) * (기간산정) 과거 공사 통합공공임대주택 계약일로부터 금회 공급하는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 * 다수의 통합공공임대주택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계약일 적용 * 갱신계약은 제외하며, 입주자가 출산, 노부모부양, 사망 등의 사유로 가구원 수가 변동되어 다른 면적으로 재신청하는 경우 감점 적용을 배제				

- **부양가족 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를 제외한 세대구성원 전원(태아 포함) + 신청자의 형제, 자매로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단,「민법」 상 미성년자 또는 60세 이상인 자에 한함)
- **해당 주택건설지역** **해당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의 행정구역(거창군)**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지구 등이 둘 이상의 주택건설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구역 모두를 같은 주택건설지역으로 간주합니다. (해당지역 거주기간 중 주민등록이 말소된 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재등록일로부터 계속 거주기간을 산정)
- **장애정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의 장애인의 장애정도(장애인 증명서를 통해 판단)에 따르며, 장애정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18. 장애인의 장애 정도 구분」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취약계층**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수급자증명서 등을 반드시 제출하여야만 가점인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 신청자 중 **희망하는 자에 한하여 동일 공급형별 일반공급 신청자로 자동 신청(접수번호 2개 부여)**되며, 주거약자용 주택 및 일반공급 각각에 대하여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주거약자용 및 일반공급에 동시 입주자 선정 시,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로 선정) 주거약자용 및 일반공급에서 낙첨 시 주거약자용 주택의 예비자로 경쟁하게 됩니다.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신청 공급형 내에서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우리공사 자체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하며, 미신청, 미계약에 따른 잔여 동・호가 발생하여도 동・호 변경은 불가합니다.

■ **일반공급**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5의2] 제3호에 따라, **공급형별 총공급호수의 5% 범위**에서 입주자격 구분(청년, 고령자, 신혼부부 등, 일반)에 따른 구분없이 모든 신청자를 대상으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사람을 추첨의 방식으로 우선 선정**하며, 잔여 물량에 대해서는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경쟁 시 소득구간별 입주자 비율이 법정비율 범위 이상이 되도록 선정합니다.**
- **우선공급 입주자 선정결과 특정 소득구간에서 선정된 입주자 비율이 법정비율을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소득구간에서는 일반공급 입주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결과 특정 소득구간에서 선정된 입주자 비율이 법정비율에 미달한 경우**에는 **타 소득구간에서 법정비율을 초과하여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신청 공급형 내에서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우리공사 자체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하며, 미신청, 미계약에 따른 잔여 동・호가 발생하여도 동・호 변경은 불가합니다.

9. 당첨자 발표 및 계약안내

당첨자 발표 【2026.10.07.(수) 15:00】

- **주택의 동・호는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없이 추첨**하며, **당첨자 명단은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및 ARS(1661-7700)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실 수 있으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자 명단 조회방법 : 청약플러스 → 인터넷청약 → 당첨자 조회)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순위에 따라 계약체결**합니다.
- **기존 예비입주자 지위를 가지고 있는 자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통합, 국민, 영구, 행복)의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입주여부는 실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에 따른 공가발생 시 예비순번에 따라 순차적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안내

■ **전자계약 【계약기간 : '26.10.27.(화) 10:00 ~ 10.29.(목) 17:00】**

- **계약금 입금 후 온라인 계약기간 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https://irts.molit.go.kr)'에서 온라인으로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개인별 가상계좌 및 온라인계약 상세 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able>
<tr><td rowspan="2">계약금 입금</td><td rowspan="2">우리공사 입금확인
(SMS 발송)</td><td>【PC 계약체결】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https://irts.molit.go.kr)</td><td>【모바일 계약체결】
"부동산 전자계약" 앱 다운로드
(Google Play)</td></tr>
<tr><td colspan="2">로그인 (공동인증서/휴대폰인증) → 계약체결(공동인증서)
→ 계약서 출력, 보관(공동전자문서센터)</td></tr>
</table>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확정일자 자동 부여 및 버팀목전세대출 이용 시 대출금리 인하 등 혜택이 제공**됩니다.

- 「**우리공사 입금확인**」**은 전자계약 기간 내 평일 업무시간(09:00~18:00)에 한하여 확인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및 SMS 발송까지는 일정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SMS는 신청접수 시 "SMS 수신동의"한 신청자에 한하여 발송하고, 수신동의하지 않은 신청자에게는 발송되지 않습니다.**
- 「**전자계약 체결(전자서명)**」**은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상시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전자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장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 전자계약 체결 시 계약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고, 임대계약 종료 시까지 열람·출력·저장이 가능합니다.

■ **현장계약【계약기간 : '26.10.29.(목) 13:00 ~ 16:00】**

공통서류	대리계약 시 추가서류
• 계약금 입금증 또는 입금사실 확인 가능한 정리된 통장 • 계약자 도장 (본인이 계약 시에는 서명가능) • 계약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위조방지 홀로그램처리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 • 계약자(당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동의서(공사양식),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 **배우자** 공통서류 외에 배우자 신분증, 계약자와의 관계입증서류 • **배우자 외의 자** **(인감증명방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공사 소정양식), 당첨자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당첨자 인감도장 **(자필서명방식)** 대리인 신분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청자 본인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일 것)

10. 기타 유의사항

- **본 단지는 소규모단지(40호)인 관계로 인근 타 단지에 비해 관리비(공용관리비) 부담액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으므로, 이를 반드시 감안하시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공공주택 특별법」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 **[신청접수]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신청접수 마감 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합니다.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 원칙에 따라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합니다. **[신청자 및 배우자(예비배우자 및 세대 분리된 배우자도 해당)가 동시신청 하는 경우 중복 신청에 해당)]**
- **[제출서류]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 시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5.28.)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제출하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①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 등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해제되며, 위약금이 부과됩니다.
② **예비신혼부부 자격으로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혼인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배우자는 반드시 신청 당시 제출한 예비배우자이어야 함)**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 미제출 등 혼인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급이 해제되며, 위약금이 부과됩니다.
③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해제됩니다.

- **[자격검증 부적격자 소명절차] 주택소유,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우리 공사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소명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제출하신 소명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2018.12.11)에 따라 **분양권등(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며, 당첨자 발표일 이전에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 당첨이 되더라도 계약이 불가**하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부적격 해제되며 소정의 위약금이 부과**되므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거주기간]** 최대 거주기간은 30년. 단, 입주자가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할증 임대조건 적용을 통한 계속 거주 가능 (단, 주택소유 부적격자는 불가)
- **[갱신계약]** 갱신계약 조건은 아래와 같으며, 갱신 임대조건은 **갱신계약 시점 입주자의 자산·소득금액, 소득구간 및 임대시세 등을 고려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결정**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15. 갱신 임대조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갱신계약 조건
①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② 자산·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갱신계약 체결이 가능하나, 「15. 갱신 임대조건」 임대조건의 할증 규정에 따라, **자산·소득 초과비율 등에 따라 소정의 할증이 부과**됩니다.

(*) 계약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후 퇴거 시까지 무주택**이어야 하며,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분양전환 되는 주택 포함)에는 갱신계약이 거절되고,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차량등록]**
 - 임대주택 단지 내에서는 임차인의 세대구성원 소유차량(임차인 전용 리스차량 및 근무회사 차량 포함) 이외의 타인소유 차량은 등록하실 수 없습니다.
 * 임차인 등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및 그 임차인과 동일한 세대를 구성(주민등록법상의 세대구성을 말함)하여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을 말함
- **[전입신고]** 임차인은 입주와 동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기타사항]**
 - 우리공사에서 제공하는 전화 및 방문상담 등은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공고문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공사에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 **당첨 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변경내용을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 앱(App)에서 개인정보를 수정하거나 우리공사로 서면통보(담당부서 문의)**하시기 바라며,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항은 우리공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세대모형, 팸플릿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단지 및 현장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홍보물에 표시된 도로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 주체가 계획·추진예정 및 실행 중인 상황을 표시**한 것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개발계획 변경으로 인한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팸플릿에 기재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가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할 때까지 기존 공공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중복 입주 중에 있는 주택 중 어느 한 쪽의 주택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 입주개시 이전에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21조(입주자모집 공고)에 따라,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행사를 실시**하며, 구체적인 일정 등에 대해서는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 입주자 사전방문 등 지정일 외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으며, 입주예정 시기는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및 건축공정 등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입주 약 2개월 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 **입주일은 해당 주택의 열쇠교부일**이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입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종료일 다음날을 입주일로 간주**합니다.

- **입주 시 잔금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 본인 확인 후 세대열쇠를 교부**하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미납잔금에 대한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실제 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전액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보증금 대출은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가능하며,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해당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아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이 부과됩니다.
- 임대료 납부는 자동이체 및 이빌링을 원칙으로 하며,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에서 자동이체 및 이빌링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는 입주 후 주민공동시설이나 부대복리시설 등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신청 및 계약 장소 주변의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설치, 대출 등)는 우리공사와 무관**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11. 지구 및 단지여건 등

일반사항

- 신청 전 단지 및 주변 여건을 확인하셔야 하며, 인근 도로 개설 계획.일정 등에 대하여는 지자체 등 관계 기관에 문의.확인하셔야 합니다.
- 거창숙박시설 정비사업 공공임대주택과 관련된 각종 보고서(실시계획승인서 등)는 LH 경남지역본부 주택품질1팀 또는 경남1권역 주택건설사업소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필요시 제반여건을 문의.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공동시설 등 단지 내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해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정일(입주자사전방문 등의 지정일)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정부의 정책이나 관련 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전 기타 자세한 단지여건, 혐오시설의 유무 및 사업부지 개발계획 등은 반드시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한 주변개발, 일조권,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 등으로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이나 타사 또는 당사 아파트를 비교하여 추가적인 마감사양,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충분히 검토 후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 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 세대당 대지 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준공시 확정측량) 등으로 인해 대지면적의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구여건

- 지구 반경 1.5km 이내 거창군청, 거창읍 행정복지센터, 거창우체국, 거창경찰서, 거창소방서, 거창세무서, 거창초등학교, 거창고등학교, 거창여자고등학교, 거창도서관, 거창버스터미널, 거창전통시장, 거창스포츠파크, 국립창원대학교 거창캠퍼스, 거창군 생활체육공원 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 지구 인근 숙박시설이 위치하고 있어 불편함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임대주택 신청 전 필히 현장답사를 통하여 단지 및 주변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내부여건

- 단지 내 조경 및 식재계획은 변경될 수 있으며, 식재(수종 및 배식) 및 시설물(휴게시설 등)은 팸플릿 등의 이미지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자전거거치대가 1층 필로티 지정구간에 1개소가 설치됩니다. (전체 세대수를 기준으로 수량 산정 후 설치될 예정입니다.)
- 난방방식은 개별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지붕은 평지붕으로 시공됩니다.
- 지상 9층 일부 구간에 조경식재가 있어 벌레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내부시설(운동기구류 및 비품류 등)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단지 출입구는 남측 1개소(주차장 출입구) 북측 1개소(필로티 출입구)입니다.
- 최고 층수는 해당 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지상 9층 규모로 건설됩니다.
- **단지내 사회복지시설 및 어린이집, 주민공동시설, 관리사무소, 근린생활시설, 경비실, 용역원휴게실, 노인정 등이 없으므로,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배치의 특성상 단지 내.외 도로와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소음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단지는 초고속정보통신건물 1등급 예비인증 단지이며 엘리베이터, 공동현관 등에 CCTV가 설치됩니다.
- 옥탑 지붕층에는 위성안테나 2개, 공시청 안테나 1개소가 설치됩니다.
- 지붕층에는 태양광시설이 설치됩니다.
- 태양광 발전시설을 통해 공용전기요금이 절감되거나, 절감금액 범위내에서 일부가 유지관리비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택배보관소가 설치되며, 택배보관소내에는 무인택배보관함이 설치됩니다.
- 지하 1층에는 펌프실 및 저수조가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 시 미세한 소음 및 진동이 전달될 수 있으며, 전기실 및 발전기실 인접 동의 경우 발전기의 비상가동 및 주기적 가동으로 인해 지상돌출물(D/A)을 통한 소음, 진동 및 매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쓰레기 분리수거소가 1층 필로티에 1개소가 설치되며 공동사용으로 인해 이용 및 통행에 불편할 수 있습니다.
- **건물 내부 2층에 근린생활시설이 설치되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인근 상가, 편의점 등과의 거리 감안시 이용에 불편할 수 있고(편의점 50m 이내, 할인마트 1,000m 이상), 단지 주변 여건상 추후 단지 주변에 근린생활시설(상가)이 형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각종 포장부위의 재질, 색상 및 문양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 관리사무실로 이동하는 통로 공간과 지하부분 계단실은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배수 트렌치는 일부 구간 물이 고일 수 있으며, 진·출입로 바닥은 동절기에 차량의 미끄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층 복도 천장에는 기계설비 덕트배관 및 전기,통신용 케이블트레이 등의 각종 배선, 배관, 케이블 등이 시공됩니다.
- 사업부지 남동측에 LPG저장탱크가 설치 됩니다.
-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설치 위치
 「방송통신 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에 의거하여 이동통신설비(중계장치 등)가 단지 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설치시기 등은 통신사업자의 여건에 의합니다.
- 단지 내 각종 포장부위의 재질, 색상 및 문양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 관리사무실로 이동하는 통로 공간과 지하부분 계단실은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배수 트렌치는 일부 구간 물이 고일 수 있으며, 진·출입로 바닥은 동절기에 차량의 미끄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층 복도 천장에는 기계설비 덕트배관 및 전기,통신용 케이블트레이 등의 각종 배선, 배관, 케이블 등이 시공됩니다.
- 사업부지 남동측에 LPG저장탱크가 설치 됩니다.

단지 외부여건

- **외부 부설주차장은 주동 출입구에서 약 160m 거리(도보)에 계획되어 이동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며 부설주차장 설계 및 인허가 승인 전으로 주차면수 등에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의 특성상 이사 시 사다리차 등 차량접근이 불가합니다.**
- **남측 42A타입 이사 시 도로 협소로 고가사다리차 접근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 전기차 충전설비는 외부 부설주차장에 2개소가 설치됩니다.
- **남측 및 서측 도로 협소(약4M)로 진출입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변에 조성된 도로의 레벨 및 도로와 단지 사이의 녹지조성(법면발생, 식재 등), 출입구 등은 신청접수 전 반드시 현장 확인 및 인허가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와 외부 도로사이의 경계 담장은 행정관서의 지침에 따라 재질·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아파트 지하 PIT층은 지반현황에 따라 레벨, 평면, 구조형식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북측 고압선로 위치로 고가사다리차 접근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 저층 세대 일부는 주변대지와 고저차이로 인하여 조망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감재 및 실내환경

- 팸플릿 등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자재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특허 및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바뀔 수 있으며 또한 자재의 품절, 품귀, 제조회사 등의 부도 등 부득이한 경우 동등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고, 이로 인한 계약자의 개별동의는 별도로 받지 아니합니다.
- 욕실장, 주방가구, 신발장 후면·하부 등 비노출 부위에는 별도의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현관, 발코니 등에서 바닥 단차는 시공 과정상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생활환경(관상용식물, 샤워, 빨래건조, 가습기 가동 등), 단열성능,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 내부에 자연환기량 감소 및 습도 증가 시 결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침실 내 붙박이장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입주자가 사용하는 가전제품(냉장고, 세탁기, 에어컨실외기 등)은 제품의 용량 및 규격에 따라 세대에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입주 전 설치 가능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고 설치불가에 따른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탁실이 세대내 별도공간에 분리되어 습기 및 결로 현상에 대한 예방조치가 필요합니다.(수시환기 등)
- 일부 저층세대는 공사시행 중에 품질확보 및 시공성 검토를 위하여 견본주택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팸플릿 등에 표현된 각 단위세대 평면의 치수는 팸플릿 제작 과정상 이해를 돕기 위하여 벽체 중심선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므로 가구 등 구입 시에는 입주자사전방문기간을 이용하여 실측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 세대 내 화재 시 탈출할 수 있는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며, 3층은 완강기가 설치되어 지상으로 피난할 수 있으며, 경보음이 발생하거나 전달될 수 있습니다. (비상탈출구 탈출에 방해되는 물건적치를 금지함)
- 발코니에는 결로방지를 위한 발코니 환기구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겨울철 기온이 급강하 시 수도동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 설비 배관과 관련하여 PD점검구가 세대 내외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싱크대 하부는 난방설비인 온수분배기 및 주위배관, 싱크배수관 등이 설치되며 수납공간으로 사용하기 부적합합니다.
- 주방용 자동식소화기가 설치되어 있고 LPG가스용이며, 인덕션등 전기열원 사용시 별도의 인덕션 차단기 등의 시공이 필요합니다..
- 세대 천장에 스프링클러헤드가 설치되며 욕실은 외부창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세대의 욕실은 시스템 욕실(UBR)로 시공됩니다.
- 세대 내 목문틀 및 시트마감 부위는 시공상 불가피하게 타카핀 자국이 보일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조명기구 등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12조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이 사용될 예정이며 팸플릿 등에는 유사 이미지를 구현한 것으로 실제 설치 시 선정된 업체에 따라 디자인 및 색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전기,통신 단자함은 현관입구 벽면에 노출되어 설치되며, 급수 계량기함은 복도 PD에 설치됩니다.
- **42타입 전면에 숙박시설이 위치하고 있어 거실 및 침실 창호는 불투명 유리로 시공됩니다.**

기타사항

- 계약 전 단지여건 등 제반사항에 대해 확인 또는 문의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등으로 인한 사항은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개시일 이전에는 이사가 불가하며,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이동통신사업자 등의 중계기는 추후 입주자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설치될 수 있습니다.
- 팸플릿 등 각종 홍보물에서 확인이 곤란한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엘리베이터 용량·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또는 변경사업계획승인도서)에 의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현재 계획 또는 예정으로 적용된 내용은 향후 인허가 과정이나 관계기관의 사정, 관련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팸플릿 등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참고자료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제작과정에서 오류·오기·오탈자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현장여건의 반영 및 구조·성능·품질개선 등을 위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등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하여야 합니다.
-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 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사업시행인가 또는 설계의 변경 등은 사업주체가 결정합니다.
- 사업승인도면과 실시설계도면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설계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의 시설물의 '위치, 규모, 색채, 단지명칭, 동 표시 및 BI' 등은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계약자의 개별동의는 별도로 받지 않습니다.
- 단지 내 지반현황에 따라 레벨, 평면 및 구조형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복도 및 엘리베이터 홀과 같은 공간은 공용이므로 관련 법령에 의거 임의로 구조변경이 금지되며 전용공간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추가 편입된 주차장 부지에 대한 토지 보상 지연이 발생할 시 입주일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12. 주택성능등급 및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에 따라 주택성능등급 및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기합니다.

아래 공공주택성능등급은 예비인증 내용으로, 본 인증 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성능등급

1) 소음관련등급

성능범주	세부 성능항목	성능등급
경량충격음 차단성능		★★★★
중량충격음 차단성능		★★★
화장실 급배수소음		★
세대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

3) 환경관련등급

성능범주	세부 성능항목	성능등급
수자원 절약	생활용 상수 절감대책의 타당성	★★
	우수이용	-
	중수도 설치	-
에너지절약	에너지성능	★★★★
지속가능한 에너지원 사용	신.재생에너지 이용	★★★★

외부소음	교통소음(도로, 철도)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	★

2) 구조관련등급

성능범주	세부 성능항목	성능등급
가변성		★★
수리용이성	전용부분	★
	공용부분	★★
내구성		★
지속가능한 자원활용 (리모델링시에만 평가)	주요구조부 재사용	-
	비내력벽 재사용	-

3) 환경관련등급

성능범주	세부 성능항목	성능등급
조경	생태면적율	★
	자연지반 녹지율	★
	연계된 녹지축 조성	-
	비오톱 조성	-
생태적가치	기존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
인접대지 영향	일조권 간섭방지 대책의 타당성	-
세대내 일조확보율		★★★★
실내공기질	실내공기오염물질 저방출 제품의 적용	★
	단위세대의 환기성능 확보여부	★
	자연통풍 확보 여부	★
폐기물 최소화	생활용 가구재 사용억제 대책의 타당성	-
생활 폐기물 분리수거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
	음식물 쓰레기 저감	★★
친환경 인증제품 사용	유효자원 재활용을 위한 친환경인증제품 사용여부	★★
	재료의 탄소배출량 정보표시	★★★
우수부하 절감	우수부하 절감대책의 타당성	-

지구온난화방지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
	오존층 보호를 위하여 특정 물질의 사용금지	★

4) 생활환경등급

성능범주	세부 성능항목	성능등급
커뮤니티 센터 및 시설.공간의 조성수준		-
보행자 도로	단지내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여부	-
	외부보행자 전용도로 네트워크 연계여부	-
교통부하저감	대중교통에의 근접성	★★★
	자전거 보관소 및 자전거도로 설치여부	-
	도시중심 및 지역중심과 단지중심간의 거리	★★★★
사회적 약자의 배려	전용부분	★
	공용부분	★
홈네트워크	홈네트워크 종합시스템	★
온열환경	각 실별 자동온도 조절장치 채택여부	★
방범안전	방범안전 콘텐츠	★
체계적인 현장관리	환경을 고려한 현장관리 계획의 합리성	★★★
효율적인 건물관리	운영/유지관리 문서 및 지침 제공의 타당성	★★★★
	사용자 매뉴얼 제공	★★★★

5) 화재소방등급

성능범주	세부 성능항목	성능등급
화재.소방	감지 및 경보설비	★
	제연설비	-
	내화 성능	★
피난안전	수평피난거리	★★★★
	복도 및 계단 유효폭	★
	피난설비	★★

*** ★로 해당 등급 표시**

■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구 분	적용 여부	구 분	적용 여부
측벽	적용	바닥(층간바닥)	적용
외벽(직접면)	적용	대기전력차단장치	적용
외벽(간접면)	적용	일괄소등스위치	미적용
창호(직접면)	적용	LED조명	적용
창호(간접면)	적용	실별온도조절장치	적용
지붕	적용	절수설비	적용
바닥(직접면)	적용	고효율설비	적용
바닥(간접면)	적용		

13. 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블록	사업주체	공종	시공업체	연대보증인	감리업체
A1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축	㈜삼강종합건설	-	㈜에스아이그룹건축사사무소 ㈜대성씨엠건축사사무소 에이앤유씨엠건축사사무소(주) ㈜대성종합기술단
		기계			
		토목			
		조경			
		통신	㈜아이테크		
		소방	㈜대아전력		
		가스	경남하이테크(주)		
		전기	남북중전기(주)		㈜진광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14.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의 임대조건 상한

입주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급형·소득구간별 임대조건에도 불구하고, 임대조건 상한 금액만을 부담하게 됩니다. 단, 신청자의 미신청 시 적용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 임대조건 상한은 자격검증 시점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에 해당하는 입주자에게 주거급여 수급여부와 임대차기간 개시일 기준 정부 고시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함에 따라, 적용여부 및 임대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서류제출기간 이후('26.07.02.(목) 이후) 임대조건 상한대상에 해당하는 자격을 득하는 자는 계약체결 이전까지 해당 서류를 제출시, 임대조건 상한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적용대상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

① (가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② (나목)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국가유공자 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종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 또는 그 유족

③ (다목)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등록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④ (라목)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상한계산 기준

•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주거급여 수급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담**

주거급여	임대조건 상한
수급 ○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에 입주자가 수령하는 **주거급여 기준임대료를 기준으로 산정한 전환임대료 범위 내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수급 ×	**「영구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산정기준」 제2호 가목**에 따른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 **주거급여 기준임대료**는 「주거급여법」 제7조 제3항 및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에 따른 기준임대료를 의미합니다.
- **주거급여 기준임대료를 기준으로 산정한 전환임대료**는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7조제3항에 따라 **입주자의 소득에 따른 기본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합산하여 산정**하되,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을 환산**한 임대료를 의미합니다.
- 임대조건 상한 적용은 **자격검증 시점 당시의 주거급여 수급여부 등을 확인하여 해당시점에 한하여 적용**하며, **임대차기간 중 소득 및 자격변경 등에 따라 임대조건 변경은 불가**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 상한 임대조건

• 세대구성원수별 주거급여액**(경상남도 거창군, 4급지)**에 따른 임대조건 상한 조건은 다음과 같으며, **임대차기간 개시일이 속하는 연도의 주거급여 기준액(해당 기준연도의 단가금액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고시된 단가금액을 적용)**을 **적용하여 산정함에 따라 아래의 임대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세대구성원수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26년 기준액)	상한 임대조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에 해당하면서 주거급여를 수급하는 임차인의 계약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1인	212,000	16,223,000	157,920	❶ 공급형별 기본 임대조건(1~6구간) < 상한 임대조건 ⇨ **기본 임대조건**으로 계약 체결 ❷ 공급형별 기본 임대조건(1~6구간) > 상한 임대조건 ⇨ **상한 임대조건**으로 계약 체결
2인	238,000	18,212,000	177,290	
3인	283,000	21,656,000	210,810	
4인	329,000	25,176,000	245,070	
5인	340,000	26,018,000	253,270	
6인	402,000	30,762,000	299,450	
7인	402,000	30,762,000	299,450	
8인	442,000	33,823,000	329,250	
9인	442,000	33,823,000	329,250	
10인	486,000	37,190,000	362,030	

• **주거급여 기준임대료**는 「주거급여법」 제7조 제3항 및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에 따른 기준임대료를 의미합니다.

• **상한 임대조건을 적용받는 가구의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은 우리공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수급자가 아닌 경우] 상한 임대조건

• 공급형별 영구임대주택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고시단가(경상남도 거창군, 4급지)에 따른 상한 임대조건은 다음과 같으며, **임대차기간 개시일이 속하는 연도의 기준단가 금액(해당 기준연도의 기준단가 금액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고시된 기준단가 금액을 적용)**을 **적용하여 산정함에 따라 아래의 임대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급형	임대조건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계	계약금(5%)	잔금(95%)					
39㎡A	3,771,000	188,550	3,582,450	74,980	+	전환불가		
					-	1,000,000	2,771,000	77,890
39㎡B	3,802,000	190,100	3,611,900	75,590	+	전환불가		
					-	1,000,000	2,802,000	78,500
42㎡A	4,110,000	205,500	3,904,500	81,710	+	전환불가		
					-	2,000,000	2,110,000	87,540

15. 갱신 임대조건

기본원칙

입주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자산, 거주기간)을 갖춘 임차인에 대한 갱신 임대조건은 **갱신계약 시점의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임차인 세대의 월평균소득구간에 해당하는 소득구간계수(0.35~0.9)를 적용하여 산정한 임대조건**으로 하되,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5% 이내의 인상률 범위에서 변경 적용됩니다. **다만, 동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소득 및 자산기준 초과자는 제외하며, 자세한 사항은 「임대조건의 할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갱신계약 시점의 관련 법령에 따라 임대조건 산정 방식은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갱신 임대조건 산정 방법

- **갱신계약 시점의 임대시세로 산정**하되, **종전계약 시 적용한 임대시세에서 우리공사에서 결정하는 임대조건 인상률 범위 내(최대 5% 이내)로 결정**

구분	① 시세요소	③ 소득요소	
보증금	(갱신시점) 임대시세	× (갱신시점) 소득구간계수	× 35%
임대료	(갱신시점) 임대시세 × 시장전환율	× (갱신시점) 소득구간계수	× 65% ÷ 12
	② 제약요소 ➜ 5% 이내 인상 제한		

- 시장전환율은 **실제 해당지역에서 적용되는 전월세 전환율**을 말하며, 갱신시점의 소득구간계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된 **갱신시점의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소득구간계수**를 의미

- (예시) 시중시세 5% 이상 지속 증가 + 입주자 소득변동으로 소득구간 계수가 변경(2→3→1구간)되는 경우

[단위 : 원]

구분	시중 전세시세	소득구간계수	임대조건 (시장전환율 4% 가정)		산출내역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최초계약	100,000,000	(1구간) 35%	12,250,000	75,830	**[보증금]** 100,000천원 × 0.40 × 35% **[임대료]** 100,000천원 × 0.40 × 65% × 4% ÷ 12
		(2구간) 40%	**14,000,000**	**86,660**	
		(3구간) 50%	17,500,000	108,330	
		(4구간) 65%	22,750,000	140,830	
		(5구간) 80%	28,000,000	173,330	
		(6구간) 90%	31,500,000	195,000	
1차 갱신계약	120,000,000	(1구간) 35%	12,862,000	79,620	(갱신시점) 임대시세 = Min [100,000천원×1.05, 120,000천원] **[보증금]** 105,000천원 × 0.50 × 35% **[임대료]** 105,000천원 × 0.50 × 65% × 4% ÷ 12
		(2구간) 40%	14,700,000	90,990	
		(3구간) 50%	**18,375,000**	**113,740**	
		(4구간) 65%	23,887,000	147,870	
		(5구간) 80%	29,400,000	181,990	
		(6구간) 90%	33,075,000	204,750	
2차 갱신계약	130,000,000	**(1구간) 35%**	**13,505,000**	**83,600**	(갱신시점) 임대시세 = Min [105,000천원×1.05, 130,000천원] **[보증금]** 110,250천원 × 0.35 × 35% **[임대료]** 110,250천원 × 0.35 × 65% × 4% ÷ 12
		(2구간) 40%	15,435,000	95,530	
		(3구간) 50%	19,293,000	119,420	
		(4구간) 65%	25,081,000	155,260	
		(5구간) 80%	30,870,000	191,080	
		(6구간) 90%	34,728,000	214,980	

- **소득(6구간), 자산 및 거주기간 초과자**는 갱신 임대조건에 할증이 부과되며, 자세한 사항은 「임대조건의 할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조건의 할증

입주자격을 갖추고 입주하였으나, **갱신계약 시 입주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임차인에게는 다음과 같이 할증된 임대조건이 부과**(1~3)됩니다. 할증이 두 개 이상의 항목에 중복하여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할증비율만 적용됩니다. 아울러 갱신계약 시점의 관련 법령에 따라 임대조건 할증 방식은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할증조건

1 소득기준 초과

- **갱신계약 시 소득기준(6구간, 기준 중위소득 대비 150% 초과)을 초과한 경우, 소득구간계수 0.9(6구간)을 적용한 갱신 임대조건(기본원칙)에 소득기준 초과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할증비율로 산정한 금액**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로 부과합니다.

소득기준 초과비율		최초 갱신계약 시	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10%p 이하	105%	110%
	10%p 초과 30%p 이하	110%	120%
	30%p 초과	115%	130%

※ 30%p 초과 구간을 적용받는 사람은 해당 주택에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에는 할증비율에 최초 갱신 시 10%p, 2회차 갱신 시 20%p를 더하여 할증하고 3회차 이상부터는 직전 적용받았던 할증비율에 10%p씩 계속 가산 할증됩니다.

2 자산기준 초과

- **갱신계약 시 자산기준을 초과한 경우, 갱신 임대조건(기본원칙)에 130% 할증비율로 산정한 금액**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로 부과합니다.

※ 해당 주택에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에는 최초 갱신 시 10%p, 2회차 이상부터는 직전 적용받았던 할증비율에 10%p씩 계속 가산하여 할증됩니다.

3 최대 거주기간(30년) 초과

- 입주자격을 갖추었으나, **최대 거주기간(30년)을 초과한 세대**에 대한 **갱신계약 시, 갱신 임대조건(기본원칙)에 다음과 같은 할증비율로 산정한 금액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로 부과**합니다.

거주기간 초과자의 최초 갱신계약 시	거주기간 초과자의 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
110%	120%

■ 할증조건의 중복적용 시

- 임대조건 할증조건(1~3)이 중복되는 입주자에 대한 갱신계약 시, **갱신 임대조건(기본원칙)에 가장 높은 할증비율만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로 부과**합니다.
- (예시) 고령자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대비 190%, 자산 5억원, 최대거주기간 초과 거주 최초 갱신계약 시

1 소득기준(*)	2 자산기준	3 거주기간	최종 할증률
110%	130%	110%	130%

(*)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70% 대비 20% 초과

■ 할증조건 예외대상

임대조건 할증 조건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대상에 해당하는 입주자의 경우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5의2 및 국토교통부 고시 「통합공공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할증(소득, 자산기준 초과에 한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규칙 및 고시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갱신계약 시점의 관련 법령에 따라 할증조건 예외대상은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우선공급

예외대상	할증 적용여부	
	1 소득기준 초과	2 자산기준 초과
【철거민 등】 시행규칙 별표5의2 제2호 나목의 1)		
가) 공공주택건설사업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	**미적용**	**미적용**
나)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주택의 세입자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에는 주택의 소유자 포함)	**미적용**	**미적용**
다)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	**미적용**	**미적용**
라) 공공사업 중 非GB해제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	적용	**미적용**
라) 공공사업 중 GB해제 택지개발 또는 도시개발사업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	**미적용**	**미적용**
마) 산업단지개발사업 주택의 세입자	**미적용**	**미적용**
자) 부도임대주택 퇴거자	**미적용**	**미적용**
차) 공익사업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	**미적용**	**미적용**
【가정폭력 피해자 등】 시행규칙 별표5의2 제2호 나목의 3)		
가)의 (6) 가정폭력 피해자	적용	**미적용**
나)의 (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미적용**	**미적용**
나)의 (2) 소년소녀가정	**미적용**	적용
나)의 (3) 해외거주 재외동포	**미적용**	적용
나)의 (4) 국군 등록포로	**미적용**	적용

• 기타사항

- **(소득기준)** 아래에 해당하는 임차인은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대비 150%를 초과하더라도 입주자격 구분별 소득구간 상한까지는 소득기준 할증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입주자격 구분	신청자격	임대조건
(예비)신혼부부	① 세대원 수가 3명 이상이고 본인 및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할 상대방)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대비 150% 초과 180% 이하인 자** ② 세대원 수가 2명이면서 본인 및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할 상대방)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대비 150% 초과 190% 이하인 자** (*) 소득 :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만 해당	6구간 적용
(예비)신혼부부 外	① 세대원 수가 1명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대비 150% 초과 170% 이하인 자** ② 세대원 수가 2명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대비 150% 초과 160% 이하인 자**	

※ 출산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상기 한도 비율에 1인 10%p, 2인 이상 20%p 가산 적용
(단,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동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이하 동일)

- **(자산기준)** 출산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임차인은 **자산기준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아래의 상한금액까지는 자산기준 할증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구분	출산자녀수		
	0명	1명	2명 이상
총자산가액	345,000,000원	379,000,000원	413,000,000원
자동차가액	45,420,000원	49,960,000원	54,510,000원

16. 편의시설 설치 안내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해당 주거약자나 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대상별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드립니다.

구분	설치항목	제공대상
현관	1. 마루굽틀 경사로 설치	주거약자 전체
거실	2. 세대별로 시각경보기 설치	
	3. (비디오폰 높이) 바닥에서 1.2m 이내	
	4. 조명밝기 600~900lx	
부엌	5. 좌식 싱크대 설치	
	6. (취사용 가스밸브 높이) 바닥면에서 1.2m 이내	
침실	7. 조명밝기 300~400lx	
욕실	8. 높낮이 조절 세면기 설치	
	9. 좌식 샤워시설	
	10. 수건걸이(바닥면에서 1.2m 높이 내외로 설치)	

• 주거약자용 주택은 기본 장애인 편의증진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중복 신청 필요 없음)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은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만 신청가능합니다.
• '동체감지기 설치'는 고령자 단독 거주 세대의 응급상황 대응을 위한 안전확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입주시 별도 신청 필요)

장애인 · 고령자 편의증진시설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입주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의 제공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대상별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드립니다.

【유의사항】

- ▶ **신청 주택의 공사진행 정도에 따라 일부 편의시설은 입주 전까지 설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세부설명자료,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 (신청대상) ❶65세 이상인 사람, ❷3급 이상 지체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 ❸청각장애인, ❹시각장애인, ❺상이등급 3급 이상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및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 신체장해 3급 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 (신청시 필요서류) 장애인증명서(장애인복지카드 사본), 국가유공자 확인원, 지원대상자 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확인원
- ▶ (신청기간) 계약 체결기간 내

구분	설치항목		제공대상
현관	마루굽틀 경사로	휠체어 통행을 위해 현관턱에 경사로 설치	❷
욕실 (1개소에 한함)	단차 없애기	통행에 지장이 되는 바닥의 단차를 줄임	❶~❺
	출입문 규격확대 및 방향 조정	출입구 폭 80㎝이상 확대 및 개폐방향 변경(안여닫이 → 밖여닫이)	
	좌식 샤워시설	좌식샤워시설 및 안전 손잡이(L자형,—자형 각 1개)	
	좌변기 안전손잡이	좌변기 벽면에 안전손잡이 설치(L자형 1개)	
	수건걸이 높이조정	휠체어에 앉아서 이용가능한 높이(1.0~1.2미터)	
	높낮이 조절 세면기	높낮이 조절 가능한 세면기 설치	
	좌변기 옆 여유공간	휠체어 이용자 등 위하여 좌변기 옆 75cm이상 여유공간 확보	❷
주방	좌식 씽크대	휠체어 및 의자 사용이 가능한 좌식 싱크대 설치	❶~❺
	가스밸브 높이 조정	휠체어에 앉아서 사용가능한 높이(1.2M 내외)	
거실	비디오폰 높이 조정	휠체어에 앉아서 이용가능한 높이(1.2M 내외)	
	비디오폰 점자표지	비디오폰(월패드) 단축버튼 점자표시	❹, ❺
	야간센스등	욕실출입구 벽체하부에 설치	❷
	시각경보기	세대내 1개소 설치	❸
	조명밝기 조정	거실 조명 밝기(600~900럭스(lux))	
침실	조명밝기 조정	침실 조명 밝기(300~400럭스(lux))	
기타	음성유도 신호기	시각장애인이 거주하는 주거동 출입구에 설치	❹

- 상이 3급이상 장애인은 상이 3급이상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신체장해 3급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도장애 이상 고엽제휴유의증환자를 말합니다.
- 편의증진 시설 제공대상은 최초 입주자로서 본인 및 부양가족 중에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서 정한 장애인·고령자가 있는 경우로서 공급신청자가 희망하는 가구(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는 신청불가)를 의미합니다.
-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현장 여건에 따라 설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17.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제공 소득·재산 항목 설명 및 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소득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건강보험 보수월액 -국민연금 표준보수월액 (소득신고) -고용·산재보험 보수월액 -장애인고용공단자료 (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 /고용부담금 신고자료 : 근로소득) -국세청종합소득(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공공일자리 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고용노동부 직접일자리사업 근로내역
	사업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원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직불금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재산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금융정보 조회결과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 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처 보훈대상자 보상급여 등
총자산	일반자산	토지, 건축물 및 주택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지방세정 자료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국토부 차적정보
	기타 자산	임차보증금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국토부 확정일자 정보 -직권조사 등록
		선박·항공기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 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지방세정 자료
		입목재산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지방세정 자료
		회원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지방세정 자료
		조합원입주권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지방세정 자료
		어업권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지방세정 자료
		분양권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금융자산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금융정보 조회결과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부채 (총자산 산정 시 자산금액 합계에서 차감)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정보 조회결과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임대보증금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국토부 차적정보

18. 장애인의 장애 정도 구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 '장애인의 장애 정도')

1. 지체장애인

가. 신체의 일부를 잃은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나)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을 잃은 사람

다) 두 다리를 가로발목뼈관절(Chopart's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라)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나)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잃은 사람

다)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및 다섯째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라) 한 다리를 발목발허리관절(lisfranc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마)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나. 관절장애가 있는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나)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다)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라)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마)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바)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사) 두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아) 두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자) 한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다)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라)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마)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바)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또는 손목관절 중 하나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사)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아) 한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자) 한 다리의 엉덩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차) 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다. 지체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 두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나) 두 손의 엄지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다)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라) 한 팔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마) 한 다리의 기능을 잃은 사람

바) 두 다리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사) 목뼈 또는 등·허리뼈의 기능을 잃은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 한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나)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다)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라)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마)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및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기능을 잃은 사람
바)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사) 한 다리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아) 목뼈 또는 등·허리뼈의 기능이 저하된 사람

라. 신체에 변형 등의 장애가 있는 사람(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해당함)
1)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5센티미터 이상 짧거나 건강한 다리 길이의 15분의 1 이상 짧은 사람
2) 척추옆굽음증(척추측만증)이 있으며, 굽은각도가 40도 이상인 사람
3) 척추뒤굽음증(척추후만증)이 있으며, 굽은각도가 60도 이상인 사람
4) 성장이 멈춘 18세 이상의 남성으로서 신장이 145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5) 성장이 멈춘 16세 이상의 여성으로서 신장이 140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6) 연골무형성증으로 왜소증에 대한 증상이 뚜렷한 사람

2. 뇌병변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보행 또는 일상생활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2) 보행이 경미하게 제한되고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현저히 제한된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보행 시 절뚝거림을 보이거나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경미하게 제한된 사람

3. 시각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좋은 눈의 시력(공인된 시력표로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은 최대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0.06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3)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퍼센트 이상 감소한 사람
4)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4. 청각장애인

가. 청력을 잃은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두 귀의 청력을 각각 8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귀에 입을 대고 큰소리로 말을 해도 듣지 못하는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나) 두 귀의 청력을 각각 6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발성된 말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
다) 한 귀의 청력을 80데시벨 이상 잃고, 다른 귀의 청력을 4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

나. 평형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로 두 눈을 뜨고 직선으로 10미터 이상을 지속적으로 걸을 수 없는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평형기능의 감소로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센티미터 이상 벗어나고, 복합적인 신체운동이 어려운 사람

5. 언어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음성기능이나 언어기능을 잃은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음성·언어만으로는 의사소통을 하기 곤란할 정도로 음성기능이나 언어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6. 지적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사람으로서 교육을 통한 사회적・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

7. 자폐성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제10차 국제질병사인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10th Version)의 진단기준에 따른 전반성 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않고,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

8. 정신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가. 조현병으로 인한 망상, 환청, 사고장애 및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이 있으나, 인격변화나 퇴행은 심하지 않은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나. 양극성 정동장애(情動障碍, 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장애)에 따른 기분・의욕・행동 및 사고의 장애증상이 현저하지는 않으나,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다. 재발성 우울장애로 기분・의욕・행동 등에 대한 우울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라. 조현정동장애(調絃情動障碍)로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9. 신장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성신부전증으로 3개월 이상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

10. 심장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가정에서 가벼운 활동은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활동을 하면 심부전증상이나 협심증증상 등이 나타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

11. 호흡기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만성호흡기 질환으로 기관절개관을 유지하고 24시간 인공호흡기로 생활하는 사람

2)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장애로 평지에서 보행해도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날숨량) 또는 폐확산능(폐로 유입된 공기가 혈액내로 녹아드는 정도)이 정상예측치의 40 퍼센트 이하이거나 안정시 자연호흡상태에서의 동맥혈 산소분압이 65밀리미터수은주(mmHg) 이하인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폐를 이식받은 사람

2) 늑막루가 있는 사람

12. 간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 만성 간질환을 가진 것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Pugh score) 평가상 C등급인 사람

2) 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 만성 간질환을 가진 것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Pugh score) 평가상 B등급이면서 난치성 복수(腹水)가 있거나 간성뇌증 등의 합병증이 있는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간을 이식받은 사람

13. 안면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노출된 안면부의 75퍼센트 이상이 변형된 사람

2) 노출된 안면부의 50퍼센트 이상이 변형되고 코 형태의 3분의 2 이상이 없어진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노출된 안면부의 45퍼센트 이상이 변형된 사람

2) 코 형태의 3분의 1 이상이 없어진 사람

14. 장루·요루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배변을 위한 말단 공장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2) 장루와 함께 요루 또는 방광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3)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으며, 합병증으로 장피누공 또는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진 사람

2) 방광루를 가진 사람

15. 뇌전증장애인

가. 성인 뇌전증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 6회 이상의 발작(중증 발작은 월 5회 이상을 연 1회, 경증 발작은 월 10회 이상을 연 1회로 본다)이 있고, 발작으로 인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질, 인지기능의 장애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수시로 필요한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 3회 이상의 발작(중증 발작은 월 1회 이상을 연 1회, 경증 발작은 월 2회 이상을 연 1회로 본다)이 있고, 이에 따라 협조적인 대인관계가 곤란한 사람

나. 소아청소년 뇌전증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전신발작, 뇌전증성 뇌병증, 근간대(筋間代) 발작, 부분발작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수시로 필요한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전신발작, 뇌전증성 뇌병증, 근간대(筋間代) 발작, 부분발작 등으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16. 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를 둘 이상 가진 장애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가 같은 부위에 중복된 경우

나.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가 중복된 경우

다. 그 밖에 중복장애로 합산하여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복권기금 등) 지원으로 건설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팀

임대 문의	전 화	전국 대표전화(콜센터) 1600-1004 (평일 09:00~18:00)
	인터넷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또는 마이홈포털(https://www.myhome.go.kr)
당첨자 ARS		(☎1661-7700) 확인방법 : 1번 당첨자 조회 → 주민등록번호(13자리) 입력 → 당첨확인
추후 예비자 순위확인 ARS		(☎1661-7700) 확인방법 : 3번 예비입주자 순번조회 → 주민등록번호(13자리) 입력 → 예비입주자 순번 안내
온라인 청약접수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또는 LH청약플러스 앱(App) →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
현장접수처 (약도)		
현장접수처 (주소)		경상남도 거창군 소만2길 62(대동리 991, 거창소만 주공아파트)

LH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편의제공 요구, 인격모독 등 갑질 피해를 겪으셨다면 저희 공사 홈페이지(www.lh.or.kr) 고객신고센터 내 「부조리 및 갑질신고」에 제보 및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05. 28.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